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

2015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연 구 진

한 영 희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정 민 석 (인권재단사람)

강 건 한 (인권재단사람)

여 재 희 (인권재단사람)

목 차

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과 개요	3
2장.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실태	6
1. 조사개요	6
1)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6
2)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의 특성	6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3
2. 인권활동가들의 현재의 생활	17
1) 인권활동가로서의 경력	17
2) 수입과 지출	19
3) 활동비 만족도	31
4) 부족한 수입의 해결	32
5) 적정 수입의 규모	41
6)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활동가 지원책	44
7) 안정적 수입의 확보, 중요한가?	46
8)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할 것인가?	47
3장. 인권활동가의 활동과 삶	51
1. 조사개요	51
1)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51
2) 면접대상자 개요	52
2. 인권활동가들의 활동과 삶	53
1) 인권활동가의 길로 들어서다	53
2) 인권활동가로서 산다는 것의 어려움	57
3)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	68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75
3. 인권활동가들이 말하는 소속단체의 현황	77
4.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활동가 지원책	82
4장. 인권활동가의 생활실태 속에서 본 인권활동가 지원마련을 위한 소고 ...	90
[부 록] 설문지	

표 차례

<표 1>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의 유급상임활동가의 수	7
<표 2> 조사대상자의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수	8
<표 3> 조사대상자 소속단체의 활동비 재정충당방식(복수응답)	8
<표 4>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9
<표 5> 4대 보험 가입여부	9
<표 6> 규정된 출/퇴근시간	11
<표 7> 실제의 출퇴근시간	12
<표 8> 조사대상자의 특성	13
<표 9> 조사대상자의 연령	14
<표 10>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	15
<표 11> 부양가족의 유무	15
<표 12> 부양가족의 수	16
<표 13>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에서의 근무형태	17
<표 14> 현 소속단체에서의 활동기간	17
<표 15> 인권활동가로 활동한 기간	18
<표 16> 조사대상자의 기본급	19
<표 17> 상임활동가의 기본급	19
<표 18> 반상임활동가의 기본급	20
<표 19> 응답단체별 기본급	21
<표 20> 수당의 항목(복수응답)	22
<표 21> 조사대상자의 월 수령 수당액	23
<표 22> 응답단체별 월 수령 수당액	23
<표 23> 응답단체별 월 수령 수당액의 기초통계자료	24
<표 24> 상임활동가의 월수령수당액	25
<표 25> 반상임활동가의 월수령수당액	25
<표 26> 상여금 항목(복수응답)	26
<표 27> 기타 상여금	27
<표 28> 연간총상여금액	27
<표 29>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28
<표 30> 기타 복지혜택	29
<표 31>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응답자의 총 활동비 총액	29
<표 32> 월 생활비	30

<표 33> 활동비 만족도	31
<표 34> 활동비 연체 경험여부	32
<표 35> 미래에 대한 대비책(금융/보험 등) 마련	32
<표 36> 빚 유무	33
<표 37> 빚 액수	33
<표 38>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	34
<표 39> 부담가는 지출항목(기타의견)	35
<표 40>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오픈형)	35
<표 41> 생활비 보조를 받은 적 있는가	38
<표 42> 생활비 보조를 제공받은 대상자(복수응답)	38
<표 43> 생활비 보조 제공처(기타의견)	39
<표 44> 수입보충을 위해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가	39
<표 45> 수입보전을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던 이유(복수응답)	40
<표 46> 생활비 보전이 필요한 이유(기타의견)	41
<표 47>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한가	41
<표 48> 얼마의 활동비가 적정한가	42
<표 49> 이전의 취업/창업 경험여부	42
<표 50> 이전 취업/창업 당시 임금	43
<표 51>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활동가 지원책(복수응답)	44
<표 52> 기타의견	45
<표 53> 안정적 수입의 확보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중요한가	46
<표 54>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할 것인가	47
<표 55> 10년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유(복수응답) ..	48
<표 56> 10년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유(기타의견) ..	49
<표 57>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49
<표 58>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기타의견)	50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공무원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문화행사가 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는 듯하다.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성소수자 인권처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인권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인권의 의미가 곡해되기도 한다. 인권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나 북한인권, 국제인권처럼 나오는 상관없는 타자화된 언어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인권이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 궁핍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역할수임을 다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누가 인권활동가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렵다. 물론 단체명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인권단체일 수 있고, 소속단체가 인권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담당업무가 인권의 영역을 다룰 때 자기정체성이 인권활동가일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권운동단체에서 인권활동가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인권활동가인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건 자기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인권활동가라고 명명하고 있는가가 인권활동가를 정의내릴 수 있는 첫 번째의 기준이 될 것이다. 명확한 자기규정이 없는데 그를 인권활동가라 부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권활동가로 규정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권활동가라 부른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인권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인권활동가를 규정하는 두 번째의 기준이 요구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권활동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인권활동가를 정의내리는 두 번째의 기준이 된다.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인권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별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

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론 공권력에 맞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인권활동가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보편성이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훼손되지 않게 끊임없이 인권을 재정 의한다. 더 나아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담지 못한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권활동가들은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국가와 사회에 사회안전망 울타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인간의 고난과 굴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해온 사람들, 즉 인권의 저자들로서 인권을 써내려온 사람들, 지금도 인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권활동가들인 것이다¹⁾.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고 열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인권을 선언할 수 있게, 고난과 굴욕에 도전할 수 있게 끊임없이 추동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인간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다.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인권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권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가는 지, 생활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인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인권단체들은 대개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만 조직이 운영된다. 그리고 후원금의 일부를 활동비로 받고 인권운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인권단체 후원금에 따라 활동비는 매우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쉽 없는 장시간 활동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권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권운동의 토대를 더 힘들게 한다. 활동가 수가 적다보니 후원회원을 늘려가기 어렵고,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는 구조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진행된 바가 있지만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비 현황과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인권활동가들의 삶의 조건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다.

1) 류은숙 지음(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류은숙은 <인권을 외치다>의 서문에서 인권의 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인권활동가들을 재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듯 인권운동은 인간이라면 차별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권력을 감시하고 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인권운동의 몫이고 심지어 인권을 말하는 국가기구,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권운동이 제 몫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대가 되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인권운동이 봉착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적 지원과 대안을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2. 연구방법과 개요

이 연구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활동가들의 활동과 현재의 삶의 모습에 대해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주목한 지점은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비²⁾이다. 한국사회 곳곳 인권을 잃어버린 현장에 뛰어들어 인권의 의제를 외치고 알리고 싸우며, 제도화되고 곡해되고 있는 ‘인권’이란 언어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 보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정작 인권활동가들의 삶은 충분히 자신의 삶과 활동을 온전히 지탱할만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이다. 이는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전제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동시에, 인권활동가들 스스로가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데 어떤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삶이 어떤 조건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권활동가들의 사회적 활동을 더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감안할 때, 이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이슈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현재적 삶의 모습을 활동비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설문

2) 인권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급받는 돈을 활동비로 볼 것인가? 생계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건비로 볼 것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인권단체의 규정에 따라서 혹은 인권활동가의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해석되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활동의 과정에서 지급받는 돈을 인권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급되는 삶의 조건이라고 본다는 전제 속에서 ‘활동비’로 규정하고자 한다.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인권활동가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설문조사는 인권활동가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기 어렵다는 점, 인권활동가 개인마다 활동의 시간과 영역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권활동가들의 대략적인 일반적 경향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심층면접을 통해서 인권활동가들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과 현실적 어려움의 구체적인 지점들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인 인권활동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연구는 인권활동가의 현재적 삶을 활동비라는 지점에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범위로 인권단체 내에서 유급으로 활동비를 받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인권단체의 규정 역시 명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 내에도 인권팀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운동단체 내에서 인권활동단체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스스로도 인권활동가라는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³⁾에 소속된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 인권재단‘사람’⁴⁾의 재정발전소 지원서비스나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고 있는 인권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정리하면,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유급활동가들이며, 구체적으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및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이 연구의 대상자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이 연구의 총 대상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 41곳, 인권재단‘사람’의 재정발전소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 50곳, 인권재단‘사람’의 인큐베이팅⁶⁾

3) 2004년 6월에 29개 단체 참여로 시작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울산, 경북, 제주 등 전국 41개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단체 연대체다. 2014년부터는 모임운동을 유연하게 하고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월1회 월례모임을 운영하며 인권운동 내의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4) 인권재단사람은 2004년 9월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2006년 인권단체재정운영지원을 위해 ‘재정발전소’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 인권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독립의 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2014년부터 인권기금을 마련해 다양한 인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단체 2곳이다. 이 중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이면서 인권재단‘사람’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단체인 14개 단체를 제외하면 총 79개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유급활동가들이다. 그러나 연구대상 단체 79개 단체 중에서 노무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와 인터넷 언론 등을 제외하면 75개 단체이고, 다시 이 중에서 유급상임활동가를 두고 있지 않은 단체 13곳을 제외하면 총 연구대상 단체는 62개 단체, 총 171명의 유급상임활동가와 28명의 유급반상임활동가가 이 연구의 대상자이다.

실제 이 연구의 대상자인 62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199명의 유급활동가들 중에 이 연구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41개 단체의 76명이며, 심층면접에 응한 피면접자는 10개 단체의 10명이다.

-
- 5) 재정발전소는 후원규모가 열악한 인권 평화단체(일부 언론사 포함)의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50개 단체 및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 6) 민간독립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단체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최종 2개 단체가 선정되어 현재 인권재단사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년 계약으로 이후에는 자립적 성장을 해야 한다.

2장.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이 지급받는 활동비의 현황과 더불어 그들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인권현장을 지키고 있는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떤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서베이몽키 사이트를 통해 입력한 후 연구대상 범주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와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고 있는 62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199명의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인권단체 메일링으로 알리고 홍보하였다. 월 1회 개최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 모임에 가서도 알리는 등 각각의 다양한 접촉채널을 통해 설문응답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24일간 진행하였다. 총 수집된 설문은 109개의 사례였으나 이 중에서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여 다시 사례를 추출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례들을 추출하였을 때, 유의미한 설문응답은 76개의 사례였다. 모두 41개의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76명의 유급상임/반상임활동가였다. 이는 연구대상군에 속하는 62개 단체 중 66.1%에 해당하는 41개의 단체의 상황이 알려진 것이다. 설문응답자는 총 76명으로 전체 연구대상군 199명 중 38.2%의 유급활동가가 설문에 응한 것이다.

2)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의 특성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인권 일반을 모두 다루는 인권단체를 포함하여 소수자인권을 다루는 단체, 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이지만 이들이

답변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정리한 기초통계자료를 통해서 설문응답자들이 소속된 인권단체의 몇 가지 경향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설문응답자들의 소속단체에 관한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① 소속단체내 상임/반상임활동가의 수

먼저 설문응답자들이 답한 소속단체의 유급상임활동가의 수와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수를 살펴보았다. 유급상임활동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76명 가운데 68명으로 응답자의 소속단체의 89.5%가 유급상임활동가가 있다고 답하였고, 8명(10.5%)의 응답자가 소속된 단체에는 상임활동가가 없다고 답했다. 상임활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2명이나 3명의 상임활동가들을 두고 있는 단체가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의 상임활동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도 18명으로 전체 응답자(76명)의 23.7%나 차지하였다.(아래 <표 1> 참조) 설문응답자들이 답한 소속단체내의 상임활동가 수의 평균치는 대략 3명이 넘는 규모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의 유급상임활동가의 수

소속단체의 유급상임활동가의 수	빈도(명)	비율(%)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의 유급상임활동가의 수
0 (상임활동가 없음)	8	10.5	평균 3.32명
1	10	13.2	
2	17	22.4	
3	12	15.8	
4	7	9.2	
5	4	5.3	
6	6	7.9	
7	8	10.5	
8	4	5.3	
합계	76	100.0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수도 따로 살펴보았다. 유급반상임활동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명(28.9%)이었고 반상임활동가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명(71.1%)이었다.(아래 <표 2> 참조) 이를 통해 대체로 설문응답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상임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22명의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

는 단체)에서 반상임활동가로 단체가 운영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수

소속단체의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수	빈도(명)	비율(%)	조사대상자 소속단체의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수
0 (반상임활동가 없음)	54	71.1	평균 0.57명
1	10	13.2	
2	7	9.2	
3	3	3.9	
5	2	2.6	
합계	76	100.0	

② 소속단체에서의 활동비 재정충당방식

〈표 3〉 조사대상자 소속단체의 활동비 재정충당방식(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후원회원	75	98.7
국고보조	1	1.3
비영리재단 프로젝트비	14	18.4
기업지원금	0	0
자체수익사업	40	52.6

설문응답자들에게 소속단체의 활동비 재정을 충당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가 ‘후원회원의 후원금을 통해서 충당한다’였다. 전체 응답자의 98.7%인 75명이 후원금을 받고 단체를 운영한다고 했고, 전체 응답자의 52.6%인 40명이 자체수익사업(교육 및 회원사업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의 18.4%인 14명이 비영리재단 프로젝트비 중 일부를 단체 활동비로 운영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징적인 사항은 기업지원금을 통하거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단체의 활동비가 충당된다고 답한 사람은 겨우 1명에 불과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표 4>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빈도(명)	비율(%)
아니오	62	81.6
예	14	18.4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소속된 단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81.6%인 62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8.4%인 14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단체의 근로계약서 작성율이 매우 낮다는 자명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인권단체 나름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고용관계임을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작성하는데, 인권단체내에서의 활동가들간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따라붙을 수 있다. 이는 인권활동가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단체의 대표를 명기하고 있지만 단체의 대표가 고용주라고 보기 어렵다. 단체 내 활동가들의 관계도 고용주-노동자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대표자 역시 순번으로 돌아가는 등 수평적인 활동가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인권단체의 특성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 이는 4대 보험의 적용여부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④ 4대 보험 가입여부

<표 5> 4대 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 가입여부	빈도(명)	비율(%)
가입되어 있다	44	57.9
가입되어 있지 않다	30	39.5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57.9%인 44명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했고 39.5%인 30명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았지만, 여전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인권 단체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개인부담금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인권단체들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에 대해 단체별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4대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고용주인 대표자와 노동자인 활동가들이 나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 내에서는 활동가들간의 관계를 고용주-노동자로 구분하여 보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에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단체 내에서도 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율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⑤ 출퇴근시간

설문응답자들이 답변한 소속단체에서의 규정된 출퇴근시간과 실제의 출퇴근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체로 규정된 출근시간이 오전 10시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71.1%인 54명이 단체 규정상 출근은 오전 10시라고 답하였고 퇴근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73.7%인 56명이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답했다.

〈표 6〉 규정된 출/퇴근시간

규정된 출근시간	빈도(명)	비율(%)	규정된 평균 출근시간
9시	7	9.2	약 9.99시(오전 10시)
9시 반	1	1.3	
10시	54	71.1	
11시	4	5.3	
13시	1	1.3	
규정없음	9	11.8	
합계	76	100.0	
규정된 퇴근시간	빈도(명)	비율(%)	규정된 평균 퇴근시간
18시	56	73.7	약 18.09시(오후 6시)
19시	6	7.9	
규정없음	11	14.5	
무응답	3	3.9	
합계	76	100.0	

조사대상자들이 답한 실제의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응답자들은 규정과는 달리 더 이르게 출근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다소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비교적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처럼 10시에 출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10시 반이나 11시, 혹은 11시 반으로 늦추어 출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출근시간의 변화는 퇴근시간의 변화와도 연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나 오후 7시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대체로 더 늦은 시간에 오후 8시나 9시, 혹은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답한 평균 퇴근시간이 대략 오후 8시쯤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18.4%의 퇴근시간이 비교적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실제의 출퇴근시간

실제 출근시간	빈도(명)	비율(%)	실제의 평균 출근시간
7시	1	1.3	약 10.48시(오전 10시 반)
9시	6	7.9	
9시 반	1	1.3	
10시	24	31.6	
10시 반	4	5.3	
11시	16	21.1	
11시 반	1	1.3	
12시	5	6.6	
13시	3	3.9	
규정없음	12	15.8	
무응답	3	3.9	
합계	76	100.0	
실제 퇴근시간	빈도(명)	비율(%)	
18시	9	11.8	약 20.27시 (오후 8시 15분)
18시 반	1	1.3	
19시	6	7.9	
20시	16	21.1	
21시	6	7.9	
21시 반	1	1.3	
22시	12	15.8	
22시 반	1	1.3	
23시	2	2.6	
규정없음	18	23.7	
무응답	4	5.3	
합계	76	100.0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 8〉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5세 이하	5	6.6
	26-30세 이하	15	19.7
	31-35세 이하	25	32.9
	36-40세 이하	14	18.4
	41-45세 이하	11	14.5
	46세 이상	6	7.9
현 거주지	서울	50	65.8
	경기도(인천제외)	17	22.4
	인천	2	2.6
	경기 수도권 이외 지역	7	9.2
부양가족 유무	없다	52	68.4
	있다	24	31.6
자녀 유무	자녀가 없다	65	85.5
	자녀가 있다	11	14.5
소속단체에서의 지위	상임활동가	65	85.5
	반상임활동가	11	14.5
인권활동가로 지내온 기간	1년 이하	8	10.5
	1년-2년 이하	6	7.9
	3년-5년 이하	17	22.4
	6년-10년 이하	23	30.3
	11년-15년 이하	12	15.8
	16년-20년 이하	10	13.2
4대 보험 가입여부	가입되어 있다	44	57.9
	가입되어 있지 않다	30	39.5
	무응답	2	2.6
기본급	50만원 이하	6	7.9
	50만원-75만원 이하	11	14.5
	75만원-100만원 이하	15	19.7
	100만원-125만원 이하	35	46.1
	125만원-150만원 이하	9	11.8

월 생활비	50만원 이하	7	9.2
	50-75만원 이하	8	10.5
	75-100만원 이하	22	28.9
	100-125만원 이하	18	23.7
	125-150만원 이하	9	11.8
	150-175만원 이하	3	3.9
	175-200만원 이하	5	6.6
	200만원-300만원 이하	2	2.6
	무응답	2	2.6
빚 유무	빚이 없다	41	53.9
	빚이 있다	33	43.4
생활비 보조 유무	보조받은 적이 있다	26	34.2
	그런 적 없다	48	63.2
	무응답	2	2.6
수입보전을 위한 다른 일을 해본 적 있는가	다른 일을 해본 적 없다	26	34.2
	해본 적 있다	48	63.2
	무응답	2	2.6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겠는가	전혀 지속할 생각이 없다	1	1.3
	지속하고 싶지만 어떻게 모르겠다	21	27.6
	할 수 있는 한 지속하고 싶다	44	57.9
	반드시 지속할 것이다	7	9.2
	무응답	3	3.9

① 연령

<표 9> 조사대상자의 연령

연령	빈도(명)	비율(%)	조사대상자의 연령
25세 이하	5	6.6	평균 34.82세
26-30세 이하	15	19.7	
31-35세 이하	25	32.9	
36-40세 이하	14	18.4	
41-45세 이하	11	14.5	
46세 이상	6	7.9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은 대체로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30대인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39명으로 50.3%이고 20대 응답자가 20명으로 26.6%, 40대 응답자가 17명으로 22.4%이었다. 설문응답자의 연령 평균치도 34.82세로 약 35세 정도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연령 평균이 약 35세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연령대로 30대 이후의 지속적인 활동여부에 중요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연령대이기도하다.

② 현 거주지

<표 10>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

현 거주지	빈도(명)	비율(%)
서울	50	65.8
경기도(인천제외)	17	22.4
인천	2	2.6
경기 수도권 이외 지역	7	9.2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전체 65.8%로 50명이었고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22.4%인 17명, 경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9.2%인 7명이었다. 설문응답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과 경기권 중심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③ 부양가족⁷⁾의 유무와 자녀의 유무

<표 11> 부양가족의 유무

부양가족의 유무	빈도(명)	비율(%)	자녀의 유무	빈도(명)	비율(%)
없다	52	68.4	자녀가 없다	65	85.5
있다	24	31.6	자녀가 있다	11	14.5
합계	76	100.0	합계	76	100.0

7)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부양가족의 개념을 따로 제시하였는데, 설문지에서 제시한 부양가족의 개념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 혹은 애인 등을 말한다고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 항목에서 부양가족의 의미는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 혹은 애인 등의 유무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결과는 부양가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훨씬 많았는데, 전체의 68.4%인 52명이 현재 부양가족이 없다고 답했고 전체의 31.6%인 24명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답했다. 부양가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몇 명인지도 물어보았다. 대체로 부양가족의 수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43.5%, 2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4%였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의 평균 부양가족의 수는 1.87명으로 약 2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표 12〉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의 수	빈도(명)	비율(%)	부양가족의 수	자녀의 수	빈도(명)	비율(%)	자녀의 수
1	10	43.5	평균 1.87명	1	5	45.5	평균 1.55명
2	7	30.4		2	6	54.5	
3	5	21.7		합계	11	100.0	
4	1	4.3					
합계	23	100.0					

부양가족의 유무와 더불어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와 자녀의 수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설문응답자들 중 자녀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5.5%인 65명이 자녀가 없다고 했고 14.5%인 11명이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답한 11명의 응답자 가운데 자녀가 1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명, 2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명이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많은 수는 부양가족이 없고, 자녀 없는 30대인 경우로 대부분으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권활동가들의 현재의 생활

1) 인권활동가로서의 경력

① 소속단체에서의 근무형태

〈표 13〉 조사대상자의 소속단체에서의 근무형태

소속단체에서의 지위	빈도(명)	비율(%)
상임활동가	65	85.5
반상임활동가	11	14.5
합계	76	100.0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모두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5.5%로 65명이었고 11명이 반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2/3가 넘는 응답자가 대부분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인권단체들이 상임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② 소속단체에서의 활동기간

〈표 14〉 현 소속단체에서의 활동기간

현 소속단체에서의 활동기간	빈도(명)	비율(%)	현 소속단체에서의 활동기간
1년 이하	12	15.8	평균 53.43개월 (약 4년 4개월)
1년-3년 이하	23	30.3	
3년-5년 이하	14	18.4	
5년- 7년 이하	13	17.1	
7년-10년이하	9	11.8	
10년-20년 이하	5	6.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의 현 소속단체에서의 활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의 인권단체에

서 얼마간 활동했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현 단체에서의 활동기간이 1년-3년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30.3%인 23명이었고 3년-5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4%인 14명, 5년-7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1%인 13명이었다. 반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명이었고 10년을 넘게 일한 응답자도 5명이 되었다. 현 단체에서의 평균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53.4개월간의 근무기간이 나오는데, 이는 대략 4년 4개월이다.

③ 인권활동가로서 활동한 기간

<표 15> 인권활동가로 활동한 기간

인권활동가로서의 경력	빈도(명)	비율(%)	인권활동가로 지낸 기간
1년 이하	8	10.5	평균 8.25년 (8년 3개월)
1년-2년 이하	6	7.9	
3년-5년 이하	17	22.4	
6년-10년이하	23	30.3	
11년-15년이하	12	15.8	
16년-20년 이하	10	13.2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현재의 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기간과 더불어 그 이전부터 인권활동가로 지내온 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전체의 30.3%인 23명이 인권활동가로 지내온 지 6년-10년 이하라고 답했다. 물론 3년-5년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22.4%로 17명이지만 10년이 넘은 인권활동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비중도 비교적 높았다. 모든 설문응답자의 인권활동경력의 평균치는 대략 8.3년 정도가 나온 것을 보면, 30대 중반의 응답자들의 8년 정도의 시간은 인권활동가로 지내온 셈이다.

2) 수입과 지출

① 활동비 중 기본급

〈표 16〉 조사대상자의 기본급

설문응답자의 기본급	빈도(명)	비율(%)	기본급의 평균
50만원 이하	6	7.9	평균 99.26만원 (약 99만원)
50만원-75만원 이하	11	14.5	
75만원-100만원 이하	15	19.7	
100만원-125만원 이하	35	46.1	
125만원-150만원 이하	9	11.8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각 소속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활동비 중 기본급은 100만원-125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응답자의 46.1%인 35명이 100만원-125만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75만원-100만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전체응답자의 19.7%인 15명이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이 받고 있는 활동비 중 기본급은 약 99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비는 대체로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유급상활동가와 유급반상임활동가의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치이다. 일주일에 2-3일 정도만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는 반상임활동가와 전일 풀타임을 근무하고 있는 상임활동가와와는 분명한 기본급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음은 유급상임활동가와 유급반상임활동가들을 분리하여 평균치를 내보았다.

〈표 17〉 상임활동가의 기본급

상임활동가의 기본급	빈도(명)	비율(%)	상임활동가의 기본급 평균
100만원 미만	9	13.8	평균 106.91만원 (약 107만원)
100만원	12	18.5	
100-117만원	28	43.1	
120-130만원	14	21.5	
130-150만원	2	3.1	
합계	65	100.0	

전체 76명의 설문응답자 중 현재 소속단체에서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응답자가 65명이었고 반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응답자가 11명이었다. 이렇게 상임활동가와 반상임활동가를 따로 분리하여 활동비로 받고 있는 기본급의 평균을 내면 분명한 활동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상임활동가들 중 100만원-130만원 정도의 월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응답자의 64.6%로 42명이나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가 117만원이다. 117만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 수치는 2015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진 기본급이다. 대체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인다. 따라서 설문응답자들 중에는 기본급으로 116만원이나 117만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상임활동가들이 받고 있는 활동비의 평균을 내보면, 약 10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균치는 2015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⁸⁾에 못 미치고 있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18> 반상임활동가의 기본급

반상임활동가의 기본급	빈도(명)	비율(%)	반상임활동가의 기본급 평균
20만원	1	9.1	평균 54.09만원 (약 54만원)
45만원	1	9.1	
50만원	3	27.3	
60만원	4	36.4	
70만원	2	18.2	
합계	11	100.0	

설문응답자 중 반상임활동가 11명의 활동비 수준을 살펴보았다. 반상임활동가의 활동비는 대체로 50만원-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상임활동가의 활동비 기본급의 평균치도 약 54만원 정도였다.

8)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정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이를 월 환산액으로 환산하면 1,166,220원이다.

〈표 19〉 응답단체별 기본급

응답단체별 기본급	빈도(개)	비율(%)	사례수	41개
50만원 이하	4	9.8	평균값	97.68 (약 98만원)
50만원-75만원 이하	7	17.1		
75만원-100만원 이하	8	19.5	표준편차	29.355
100만원-117만원	11	26.8	최소값	20만원
117만원-130만원	9	22.0		
130만원-150만원	2	4.9	최대값	147만원
합계	41	100.0		

설문응답자들의 활동비 기본급은 대체로 소속된 단체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체계와 내규속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이 온라인 조사에 응해준 설문응답자들이 41개 단체 중 특정 몇몇 단체에 집중되었다면 실제 몇몇 인권단체의 활동비 수준이 과잉표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각 단체별로 활동비 기본급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했다. 단체별로 개인 활동가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경력차이가 다소 고려되긴 하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단체별로 복수의 응답자 있을 때, 같은 단체의 응답자들 중 무작위로 한명을 골라 추출했고 그들이 답한 소속단체의 활동비 기본급을 따로 뽑아 나타낸 표가 위의 표이다. 각 인권단체에 따라서 활동비의 규모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경우가 100만원-117만원의 월 활동비 기본급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응답자의 11명으로 총 41개 단체의 26.8%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응답자들이 답했다. 그리고 117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를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총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0%를 차지하였다.

소속단체별로 응답자들이 답한 기본급의 기초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기본급을 월 20만원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부터 최대로는 월 147만원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까지 있었고 41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들이 말한 기본급의 평균치는 약 98만원 정도였다. 이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활동비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임을 알 수 있다.

② 수당⁹⁾

<표 20> 수당의 항목(복수응답)

수당항목	빈도(명)	비율(%)
교통비 보조	16	21.1
통신비 보조	7	9.2
식대 보조	42	55.3
근속수당	8	10.5
자녀수당	2	2.6
직급수당	2	2.6
연호봉	10	13.2
야근 및 휴일수당	1	1.3
기타	3	3.9
없다	26	34.2

* 총 설문응답자는 76명이다.

설문응답자들이 받고 있는 활동비의 기본급 외에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있다면 어떤 항목들의 수당이 있으며, 그 수령액은 대략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해보았다.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소속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수당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식대보조였다. 이 항목은 단체에서 함께 식사를 해먹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 76명 중 55.3%인 42명이 식대 보조를 받고 있다고 답해서 가장 많은 단체에서 식대보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수당항목들은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비교적 교통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응답자의 21.1%인 16명이 교통비를 보조받고 있었다. 인권단체에서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로 인권교육이나 각종 사회단체 연대가 있는데, 이 경우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예들을 포괄하여 답변한 것으로 교통비 보조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식대보조와 교통비 보조 외에 연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들도 비교적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13.2%인 10명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연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

9)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수당의 개념을 기본급을 보완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이라고 따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편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34.2%인 26명이었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월 수령 수당액

월수령수당액	빈도(명)	비율(%)	월 수령 수당액 평균
수당없음	18	23.7	평균 12.65만원 (약 13만원)
5만원 이하	6	7.9	
6만원-10만원 이하	10	13.2	
11-20만원 이하	5	6.6	
21-30만원	5	6.6	
31만원 이상	4	5.3	
무응답	28	36.8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수당으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다. 무응답을 제외하면 수당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답한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는 6만원-10만원 이하의 월 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총 10명이었다. 물론 20만원이 넘는 액수의 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도 9명이나 되었다.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들의 월 수령 수당액의 평균치는 약 1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왔다.

<표 22> 응답단체별 월 수령 수당액

응답단체별 월별 수당액	빈도(명)	비율(%)
수당없음	8	19.5
5만원 이하	4	9.8
6만원-10만원 이하	5	12.2
11만원-20만원 이하	4	9.8
21만원 이상	4	9.8
소계	25	61.0
무응답	16	39.0
합계	41	100.0

<표 23> 응답단체별 월 수령 수당액의 기초통계자료

사례수	유효사례	25개
	무응답	16개
평균값		11.76 (약 12만원)
표준편차		18.021
최소값		없음
최대값		85만원

설문응답자의 월 수령 수당액도 응답자가 소속된 단체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단체별 수당액의 분포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체별 수당액의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전체 41개 단체 중 몇몇 단체에서 여러 명의 활동가들이 응답하였을 때, 특정 단체의 상황이 과잉표집될 가능성을 배제시켜놓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단체별로 무작위로 추출된 1인의 응답자가 답한 자료만으로 단체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41개의 단체별로 보았을 때, 무응답 16명을 제외하고 25명 중에 수당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의 단체는 총 8개 단체로 전체 41개 단체의 19.5%에 해당한다. 그 외는 월 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단체부터 최대 월 85만원의 수당¹⁰⁾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단체까지 다양했다. 단체별로 추출하여 보았을 때, 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말한 월 수령 수당액의 평균치는 약 12만원 정도였다.

10) 인권단체들의 재정상황을 짐작하건대, 85만원의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체로 설문응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의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았다. 수당을 기본급 외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이라고 별도로 개념을 규정하고 상여금도 특별한 시기 혹은 특정 성과 이상을 달성하였을 때 제공받는 활동분이라고 별도로 개념을 규정하였지만, 실제 응답자들은 자신의 활동비를 월별 지급받는 금액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그 세부항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응답들을 살펴보면,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서 계산하여 답하기도 했고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모두 합쳐 계산하여 답하기도 했다. 그래서 직접 설문응답들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만원의 월별 수당액 최고값은 상여금과 합산하여 계산된 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힌다.

〈표 24〉 상임활동가의 월수령수당액

상임활동가의 월수령수당액	빈도(명)	비율(%)	상임활동가의 월 수당액
수당없음	17	26.2	평균 13.09만원 (약 13만원)
5만원 이하	5	7.7	
6만원-10만원 이하	10	15.4	
10-20만원 이하	5	7.7	
21-30만원	5	7.7	
31만원 이상	4	6.2	
무응답	19	29.2	
합계	65	100.0	

〈표 25〉 반상임활동가의 월수령수당액

월수당액	빈도(명)	비율(%)	반상임활동가의 월평균수당액
수당없음	1	9.1	평균 2.5만원 (2만 5천원)
5만원	1	9.1	
무응답	9	81.8	
합계	11	100.0	

유급상임활동가와 유급반상임활동가를 분리하여 월 수령 수당액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이 유급상임활동가들인 경우가 반상임활동가들에 비해서 월 수령 수당액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활동가들인 응답자의 월 수령 수당액이 평균 13만원 정도였고 반상임활동가인 응답자의 월 수령 수당액이 평균 2만 5천원 정도였다.

③ 상여금¹¹⁾

<표 26> 상여금 항목(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명절상여금	46	60.5
휴가상여금	15	19.7
기타	10	13.2
없다	25	32.9

** 총 응답자는 76명이다

설문응답자들이 소속단체에서 받고 있는 상여금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크게 명절상여금과 휴가상여금을 구분하였다. 총 76명의 응답자 가운데 상여금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2.9%인 25명이었다.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는 휴가상여금보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전체응답자의 60.5%인 46명이 명절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전체의 19.7%인 15명만이 휴가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밖에 기타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9명 가운데 정해진 바는 없지만 단체의 형편이 나아지면 명절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2명이었고 생일이나 여성의 날, 혹은 사업종료 후 단체의 상황에 여유가 생길 때에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11)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상여금의 개념을 특별한 시기 혹은 특정 성과 이상을 달성하였을 때 제공받는 할증분이라고 제시하였다.

<표 27> 기타 상여금

기타 상여금	빈도(명)
100% 상여금을 분기별로 제공 받다가 2014년부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다	1
기본 상여금	1
명절상여금이 단체 사정에 따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2
사업종료 후 여유가 있을 때	1
생일	1
소정의 문화상품권과 이와 상등한 선물	1
여성의 날	1
연구프로젝트 참여 연구비 50%	1
합계	9

<표 28> 연간총상여금액

연간총상여금액	빈도(명)	비율(%)	연간 총상여금액
상여금 없다	1	1.3	평균 36.38만원 (연간 약 36만원, 월별로 약 3만원 수준)
10만원 이하	15	19.7	
20-30만원	17	22.4	
40만원-50만원	4	5.3	
60만원-90만원	3	3.9	
100만원-150만원	4	5.3	
200만원	1	1.3	
무응답	31	40.8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상여금의 액수는 연간으로 환산하도록 하였는데, 대체로는 연간 30만원 아래의 상여금을 제공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총 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3.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100만원 정도를 기본급 수준이라고 보았을 때, 상여금은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받거나 기본급을 상회하는 수준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무응답을 제외한 설문응답자들이 답한 연간 총상여금액은 평균 약 36만원 정도였다. 이를 월별로 계산해보면 월 약 3만원 가량의 상여금을 따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④ 복리후생제도

<표 29>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안식년제도	52	68.4
장학제도	1	1.3
활동가 교육지원	43	56.6
정기건강검진	11	14.5
연월차 휴가제도	57	75.0
병가	43	56.6
기타	12	15.8
없다	9	11.8

설문응답자들이 소속단체에서 제공받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설문응답자의 75%인 57명은 연월차 휴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68.4%인 52명은 안식년 제도를 받는다고 답했고 56.6%인 43명은 활동가 교육지원을 받고 있고 같은 수의 응답자들이 병가를 단체에서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연월차 휴가나 안식년제도, 활동가 교육지원, 병가 등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11명의 응답자가 단체로부터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체로부터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월이나 안식주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명이 있었고 묵돈이 들어가는 병원비를 제공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필요시 논의하면 협의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등이 있었다. 특히 기타의견으로 퇴직금, 4대 보험 납부금 중 근로자분을 단체가 제공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각각의 단체들이 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조하는 다양한 형태를 단체별로 논의해서 내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기타 복지혜택

기타의견	빈도(명)
복리후생비 30만원 이상의 큰 병원비	1
상근활동가가 필요시 요청 지원	1
안식월	1
안식주/3개월에 1주 안식휴가	4
안식주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비로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 범주를 좀 열어두어(운동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업무시간이나 휴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1
정기적은 아니나 건강검진에 대해 혜택을 요구 가능	1
정해진바 없으나 필요시 논의해서 결정	1
퇴직금, 4대 보험금 중 근로자 지급분 지원	1
합계	12

⑤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월 활동비 총액

<표 31>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응답자의 총 활동비 총액

활동비 총액	빈도(명)	비율(%)	복수의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총 활동비 총액
100만원 이하	5	35.7	평균 116.64만원 (약 117만원)
100-125만원	3	21.4	
125-150만원	4	28.6	
150-200만원	2	14.3	
합계	14	100.0	

설문응답자들 중에서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비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총 14명의 응답자가 복수의 단체에서 복수의 활동비를 받고 있었다. 반상근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복수의 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를 월별로 총액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보았다. 활동비 총액의 규모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있었으나 100만원 이상인 경우들이 다소 많았다. 전체적인 활동비 총액의 평균치로 살펴보면, 약 117만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2015년 최저임금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월 생활비

<표 32> 월 생활비

월 생활비	빈도(명)	비율(%)	월 생활비
50만원 이하	7	9.2	평균 111.42만원 (약 111만원)
50-75만원 이하	8	10.5	
75-100만원 이하	22	28.9	
100-125만원 이하	18	23.7	
125-150만원 이하	9	11.8	
150-175만원 이하	3	3.9	
175-200만원 이하	5	6.6	
200만원-300만원 이하	2	2.6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한달 지출에 드는 대략적인 월 생활비에 대해 물어보았다. 5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부터 200만원-300만원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답한 응답자에 이르기까지 그 지출의 정도는 다양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75만원-10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9%인 22명이 75만원-10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매달 지출한다고 답했고 100만원-125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출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3.7%인 18명이었다. 부양가족없이 생활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보았을때, 이러한 생활비 규모는 활동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전부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설문응답자들이 답한 월 생활비 평균치를 살펴보아도 같다. 평균 약 111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활동비 만족도

① 활동비 만족도

<표 33> 활동비 만족도

활동비 만족도	빈도(명)	비율(%)	활동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	15.8	평균 2.72
만족하지 않는다	18	23.7	
보통이다	23	30.3	
만족한다	19	25.0	
매우 만족한다	2	2.6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 활동비 만족도 평균값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1점, '만족하지 않는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만족한다'에 4점,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을 각각 부여하여 응답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다

설문응답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활동비 만족도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30.3%인 23명이 활동비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활동비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의 중간값이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라고 본다면)를 제외하고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합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39.5%인 30명이 현재의 활동비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합한 수는 전체 응답자의 27.6%인 21명이었다. 이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1점, '만족하지 않는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만족한다'에 4점, '만족하지 않는다'에 5점씩을 각각 부여하고 이 점수에 대한 평균치를 통해 살펴본 활동비 만족도 값에서도 파악해볼 수 있다. 활동비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은 2.75로 중간값 3에 가깝기는 하지만 3보다는 낮은 점수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활동비가 연체된 적이 있는가

<표 34> 활동비 연체 경험여부

활동비 연체 여부	빈도(명)	비율(%)	연체된 활동비 항목(복수응답)	빈도(명)	비율(%)
연체된 적이 있다	12	15.8	기본금	12	15.8
연체된 적이 없다	62	81.6	기본금 외 별도수당	0	0
무응답	2	2.6	상여금	1	1.3
합계	76	100.0	복지혜택	0	0
			기타	1	1.3

설문응답자들에게 자신들이 받는 활동비를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연체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15.8%인 12명이 활동비가 연체된 적이 있었다고 답했고 81.6%인 62명은 연체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서 설문응답자들이 소속된 단체가 활동비를 연체할 정도의 재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겪은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활동비 연체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이 받지 못했던 활동비는 기본금인 경우가 많았다.

4) 부족한 수입의 해결

① 미래에 대한 준비

<표 35> 미래에 대한 대비책(금융/보험 등) 마련

미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빈도(명)	비율(%)
가입되어 있지 않다	17	22.4
사금융 혹은 사보험 중 한 군데만 가입	32	42.1
사금융과 사보험 두 군데 모두 가입	25	32.9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금융/보험 서비스 가입여부	빈도(명)	비율(%)
사금융서비스 가입	37	48.7
사보험서비스 가입	45	59.2
현재 가입된 곳 없다	17	22.4

설문응답자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알 수 없는 변동가능성에 대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크게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정도만을 확인하였다. 설문응답자들 가운데 금융이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22.4%인 17명이었다. 금융이나 보험상품 둘 중 한 곳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42.1%인 32명이었고 두 군데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의 32.9%인 25명이었다. 비교적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금융이나 보험상품을 통해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22.4%인 17명이나 해당되었다.

② 빚의 유무

<표 36> 빚 유무

항목	빈도(명)	퍼센트
빚이 없다	41	53.9
빚이 있다	33	43.4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현재 빚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빚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는데, 전체의 53.9%인 41명이 빚이 없었고 반면 전체의 43.4%인 33명이 빚이 있다고 답했다.

<표 37> 빚 액수

빚 액수	빈도(명)	퍼센트	평균 빚 액수
100만원 이하	4	12.5	21,431,250원
100-500만원 이하	7	21.9	
500-1000만원 이하	4	12.5	
1000-2000만원 이하	10	31.3	
2000-5000만원 이하	4	12.5	
6000만원 이상	2	6.3	
합계	32	100.0	

설문응답자들 중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어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100만원 이하의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12.5%인 4명이었지만 그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8명이었다. 그 중에서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 6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2명이 있었다. 빚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지고 있는 빚의 평균 액수는 약 2천 1백만원 정도였다. 설문응답자들의 수입이나 지출규모로 보았을 때, 2천만원 이상의 빚을 계획대로 갚아나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③ 부담스러운 지출항목

〈표 38〉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

항목	빈도(명)	비율(%)
주거비	18	23.7
대출금	7	9.2
대출이자	3	3.9
교육비	4	5.3
세금 및 공과금	6	7.9
의료비	9	11.8
식비	8	10.5
의류 및 잡화비	4	5.3
문화생활비	4	5.3
교통비	1	1.3
반려동물 양육비	1	1.3
기타	6	7.9
소계	71	93.4
무응답	5	6.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다양한 지출항목 가운데 어떤 지출항목이 가장 부담스러운지를 물어보았다. 지출항목 가운데에서는 주거비 항목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3.7%인 18명이 답했고 다음으로는 11.8%인 9명이 답한

의료비 항목과 10.5%인 8명이 답한 식비항목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밖에 대출금과 세금 및 공과금 항목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의 지출이나 통신비, 부양비, 단체 후원금 등의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표 39〉 부담가는 지출항목(기타의견)

기타의견	빈도(명)
모임, 뒤풀이 등에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	1
부양비	1
술값	2
통신비	1
투쟁 및 단체 후원금 등	1
합계	6

④ 부담되는 지출의 이유

설문응답자들에게 다음의 지출항목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주거비 항목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지출항목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비의 경우는 계획적인 지출이 불가능하고 따로 준비해둔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한 경우들이 있었고 대출금의 경우는 이 경우 역시 몫돈이 들어가는 주거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주거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경우 그 부담금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대출금의 이자 역시 만만치 않은 지출비용이라서 부담스럽다고 말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그밖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꺼번에 몫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있었고 부양비나 식비가 부담스럽다고 말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대체로 몫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 액수의 부담감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한번에 들어가는 지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입의 규모가 적은 응답자들의 경우 식비나 문화생활비는 더 지출을 줄이거나 더 지출을 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40>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오픈형)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유	빈도(명)
2명이라서(교육비)	1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식비)	1
겨울 난방비 폭탄(주거비문제)	1
계속오름(세금 및 공과금)	1
계획적인 지출이 불가능하고, 따로 예비해둔 돈이 거의 없어서(의료비문제)	1
고정된 꽤 큰 지출. 해마다 인상.(주거비 문제)	1
공과금이 많다 (세금 및 공과금)	1
교육비 지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상적인 압박, 교육비 항목의 돈을 모아도 높은 금액의 돈이므로 한번에 빠져나가는데에 대한 허탈감.(교육비)	1
교통비 부담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1
기본 통신비 10만원 + 기타 필요한 지출에 통신비로 지출(통신비)	1
기본적으로 월세가 너무 높다. 현재 학업 혹은 자녀양육으로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주거다. 그리고 주거비 지출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거비)	1
너무 비싸니까요. 월 45만원(주거비)	1
다른 건 참더라도 식재료나 외식비를 줄이긴 어려운데... 물가가 워낙 올라서 부담됨. 일의 성격상 이동이 많다보니 교통비나 외식비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음(식비)	1
대출이자가 너무 큼(대출이자)	1
대출이자가 높아요(교육비, 학자금 대출받은 듯)	1
더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으나 그러하지 못해서 (문화생활비)	1
더 이상 줄일 수 없기 때문에(식비)	1
두 명의 청소년 자녀이므로 학원비와 학비가 부담스럽다 (교육비)	1
또래만큼의 지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벼룩시장 할인 또는 소비 없는 삶 등으로 지출을 피하죠(의류 및 잡화비)	1
마음이 가니 하고 싶는데 투쟁사업장이나 후원이 절실한 단체들이 너무 많다.	1
매달 일정액을 갚아야 함(대출금)	1
먹고 싶은 게 많아서(식비)	1
밥값은 비싼데 줄일 수 없어서(식비)	1
배우자, 자녀의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문화생활비)	1
별이의 70%를 차지(식비)	1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생식을 시키기 때문에.(반려동물 양육비)	1
보험이 안되는 게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늘어나기 때문(의료비)	1
부양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110 활동비 중 60을 차지해요.(부양비)	1
비싸다(주거비)	1
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 진료시 부담(의료비)	1

소모품인 의류 및 각종 잡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개인의 취향과 눈높이를 배제한 채 되도록 저렴한 품목들을 구매해야 하며 그마저도 사실 낮은 활동비 안에서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생활비 등을 활동비 안에서 충당하다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류 및 잡화에 투자 (의류 및 잡화비)	1
수입의 1/3이상이 대출이자로 나가기 때문 (대출이자)	1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함들게 하는 요인(대출금)	1
식재료비 계속 상승하는 우리나라(식비)	1
아끼고 적게 써도 수천만원의 전세 대출금이란 빚이란 게 있어 부담스럽다. 또 주거공간을 옮겨다녀야하므로 더 돈이 들어갈까봐 부담스러움(대출금)	1
아무래도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항목이어서.(의료비)	1
액수가 크고 상한기간이 길다.(대출금)	1
여행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여행하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편이다(문화생활비)	1
월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주거비)	1
월급이 워낙 적어서 세금이 나가는 비율이 많이 차지함 (세금 및 공과금)	1
월세가 나의 수입에 비해 많아서(주거비)	1
월세를 내므로. 또 앞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대한 불안(주거비)	1
자주는 아니지만 큰 비용이 한꺼번에 지출되기 때문에(의료비)	1
전세금 대출금 이자 및 원금상환(대출금)	1
제일 비싸서(주거비)	1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재활운동비가 의료비항목으로 매월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음 (의료비)	1
지역의보. 국민연금 지역가입, 동절기 난방 등이 고정된 지출로 부담이 큼 (세금 및 공과금)	1
지출 비중이 가장 크고,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주거비)	1
지출 중 가장 큰 부분 차지(주거비)	1
지출규모가 커서(주거비)	1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식비문제)	1
지출에서 비중이 큰데 줄이기는 쉽지 않다(뒤푼이 비용)	1
지출 항목 중 액수가 가장 크다(주거비 문제)	1
진료만 받아도 40만원이 훌쩍..보험이 없어서(의료비문제)	1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서(교통비문제)	1
친동생이 장기입원 중이라 정기적으로 병원비가 지출중임.(의료비)	1
콘서트 티켓비가 비싸다(문화생활비)	1
품위유지를 위해 옷을 주기적으로 사 입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충당하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음.(의류 및 잡화비)	1
한 항목에 가장 많은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주거비)	1
한달 생활비중 자취 월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큼(주거비문제)	1
현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야해서. 비싸서(주거문제)	1

현재 거주지 이전에는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으나 저렴한 전세집을 구해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건보료 등 세금 항목이 새롭게 부과되어 전에 없던 지출이 생겨서. (세금 및 공과금)	1
현재 활동비로는 상환하기가 쉽지 않아서(대출금)	1
활동비에 비하여 전세, 월세가 너무 높아 힘들다(주거비문제)	1
희귀난치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보장구비용 지출(의료비)	1
합계	67

⑤ 생활비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가

<표 41> 생활비 보조를 받은 적 있는가

항목	빈도(명)	비율(%)
보조받은 적이 있다	26	34.2
그런 적 없다	48	63.2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활동비로 인한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34.2%인 26명이 생활비 보조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63.2%인 48명은 생활비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 42> 생활비 보조를 제공받은 대상자(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부모님	12	46.2
애인	7	26.9
형제자매	3	11.5
친구 및 가까운 지인	11	42.3
금융기관	5	19.2
기타	3	11.5

**총 응답자는 26명이다.

생활비 보조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누구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아보았는지를 물어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

다. 해당 문항의 응답자 가운데 46.2%인 12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보조를 받았고 또 42.3%인 11명이 친구 및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다고 답했고 26.9%인 7명은 애인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밖에 금융기관이나 형제자매로부터 보조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장애연금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있었다.

〈표 43〉 생활비 보조 제공처(기타의견)

기타의견	빈도(명)
예술인복지재단	1
장애연금	1
청약저축 해약	1
합계	3

⑥ 수입보충을 위해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표 44〉 수입보충을 위해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항목	빈도(명)	비율(%)
다른 일을 해본 적 없다	26	34.2
해본 적 있다	48	63.2
무응답	2	2.6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에게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급받는 활동비 외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설문응답자의 34.2%인 26명은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63.2%인 48명은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수입 보충을 위해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입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로부터도 확인된다.

〈표 45〉 수입보전을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던 이유(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활동비만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35	72.9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6	12.5
이사 전월세 인상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8	16.7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2	4.2
예상치 못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3	6.3
재충전 및 휴가기간의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10	20.8
갑작스런 자산손실을 메꾸기 위해(차량사고 등)	5	10.4
기타	5	10.4

** 총응답자는 48명이다

수입보전을 위해 다른 일을 했던 응답자들에 한해 왜 다른 일을 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답하게 되어 있었다. 해당 문항의 응답자들 가운데 72.9%인 35명은 ‘활동비만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0.8%인 10명은 ‘재충전 및 휴가기간의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서’ 라고 답했고 16.7%인 8명은 ‘이사, 전월세 인상 등 늘어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라고 답했으며 12.5%인 6명은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서 응답자들은 활동비로만 생활비 충당이 어렵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기 늘어난 지출에 대한 보전을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견도 있었는데 기타의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서 생활비 보전을 해야 했던 것도 다른 일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일이 제안되어 생활비를 보충할 기회가 생겨서 다른 일을 했던 것도 이유로 나타난다.

〈표 46〉 생활비 보전이 필요한 이유(기타의견)

기타의견	빈도(명)
간헐적으로 글이나 교육 정탁이 들어옴	1
길고양이 데려와서 병원비와 사료비가 필요했음	1
다른 일도 재밌어서	1
부양비 부족	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2
업무적으로 강의요청이 있어서	1
예상치 못한 지출발생	1
원고 작성으로 부가 수입이 생겨 저축을 할 수는 있었지만, 수입자체가 원고작성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1
특정 이유가 있기보다는, 추가 수입을 통해서 생활비 보전	1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안되어서	1
합계	11

5) 적정 수입의 규모

① 현재의 활동비, 적정한가

〈표 47〉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한가

항목	빈도(명)	비율(%)
적정하다	13	17.1
적정하지 않다	60	78.9
무응답	3	3.9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17.1%인 13명에 불과했고 78.9%인 60명은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3가 넘는 숫자가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답한 것이다.

②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비

<표 48> 얼마의 활동비가 적정한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비	빈도(명)	비율(%)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비
100만원 이하	6	10.0	평균 165.92만원 (약 166만원)
101-130만원	3	5.0	
131-160만원	26	43.3	
161-190만원	13	21.7	
191-220만원	8	13.3	
221만원 이상	4	6.7	
합계	60	100.0	

현재의 활동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비는 어느 수준 인지를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자는 131만원-16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해당 문항의 총 응답자 60명 가운데 43.3%인 26명이 131만원-16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21.7%인 13명이 161만원-19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13.3%인 8명은 191만원-22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이 문항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비의 평균을 내보면 약 166만원 정도였다.

③ 이전의 취업/창업 경험 여부

<표 49> 이전의 취업/창업 경험여부

이전의 취업이나 창업경험여부	빈도(명)	비율(%)
아니오	34	44.7
예	42	55.3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이 현재의 소속단체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취업이나 창업을 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3%였고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경험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 3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7%였다.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갖고 있는 응

답자가 그렇게 않은 경우에 비해 많았다. 아무래도 응답자의 연령대가 30대의 경우가 많은 만큼 이전의 취업경험이나 창업경험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50> 이전 취업/창업 당시 임금

취업/창업 당시 임금	빈도(명)	비율(%)	취업/창업 당시의 임금 평균치
100만원 이하	7	17.5	176.50만원 (약 177만원)
100-150만원 이하	14	35.0	
160-200만원 이하	11	27.5	
200-250만원 이하	3	7.5	
250-450만원	5	12.5	
합계	40	100.0	

더불어, 설문응답자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당시 제공받았던 임금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는데, 100만원-150만원 이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전체응답자의 35.0%인 14명이 100만원-150만원의 임금을 받았었다고 답했고 160-2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11명(27.5%), 1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7명(17.5%)이었다. 이전 취업이나 창업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당시 평균 임금은 약 177만원 정도였다. 이는 현재 설문응답자들이 인권단체로부터 제공받는 활동비 수준이 기본급 99만원, 월 지급받는 수당이 약 12만원 정도, 월 제공받는 상여금이 약 3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소속단체로부터 대략 월 114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활동비 액수를 이전 취업이나 창업 당시 받았던 임금과 비교해보면 약 50만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았을 때, 현재 활동가들이 이전의 취업이나 창업 경력 당시 받았던 임금보다 더 적은 규모의 수입으로 현재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활동가 지원책

〈표 51〉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활동가 지원책(복수응답)

인권활동가 지원책	빈도(명)	비율(%)
안식년 제도와 같은 유급재충전의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26	34.2
개인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조 (정기검진 및 비용부담이 드는 진료보조 등)	26	34.2
인권활동가로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 제공 및 지원	8	10.5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 기 장학제도 마련	7	9.2
재충전 및 휴가기간의 경비지원	16	21.1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보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	32	42.1
인권활동가들의 주거비 부담 지원책	22	28.9
인권활동가들의 문화생활보조를 위한 지원 (영화/연극/책 구입 등의 지원)	2	2.6
인권활동가들의 교통비/통신비 보조를 위한 별도의 지원	6	7.9
인권활동가들의 자녀를 위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5	6.6
기타	1	1.3

** 총응답자는 76명이다

설문응답자들에게 소속단체나 사회적 기금을 통해서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42.1%인 32명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보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설문응답자의 34.2%인 26명이 ‘안식년 제도와 같은 유급재충전의 시간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또 마찬가지로 26명이 ‘개인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1.1%인 16명이 ‘재충전 및 휴가기간의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활동가들이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로서는 안정적인 활동이 비교적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유급휴식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나 미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강권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지원책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은 ‘안식년과 같은 유급재충전의 시간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에 비해 많았다는 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앞

서 살펴본 응답자의 소속단체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로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는 제도가 ‘안식년 제도’ 였다. 다시 말해, 현재 인권단체에서 확보되어 있는 안식주, 안식월, 안식년 제도가 이미 있는데도, ‘안식년제도와 같은 유급재충전의 시간확보를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많은 인권단체 안에서 이미 제도상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요구되는 지원책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권단체가 2-3명의 상임활동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을 쓸 수 있을 만큼 경력있는 한명의 상임활동가가 장시간 유급휴식을 갖는다는 것이 단체의 재정상태와 활동력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식년 제도가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다. 또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유급으로 휴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요구로 이 문항의 설문결과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설문응답자들이 말하는 인권활동가 지원책의 기타의견으로는 여러 수당도 좋지만 수당이 없어도 될 정도의 기본급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타의견 역시 앞서 설명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활동비 보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52> 기타의견

기타의견	빈도(명)
여러 수당제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급이 수당이 없어도 될만큼의 금액이 되었으면 한다	1

7) 안정적 수입의 확보, 중요한가?

〈표 53〉 안정적 수입의 확보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중요한가

안정적 수입의 확보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중요한가	빈도(명)	비율(%)	안정적 수입의 확보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중요한가
30%-40%	6	7.9	평균 73.32%
50%	6	7.9	
60%-70%	22	28.9	
80%-90%	28	36.8	
90%-100%	11	14.5	
무응답	3	3.9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의 확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0-100%의 비중의 범위 안에서 답하게 하였다. 설문응답자의 36.8%인 28명이 안정적 수입의 확보는 80-90%의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28.9%인 22명이 60-70%의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안정적 수입의 확보가 90-100%의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14.5%인 11명이나 차지했다. 설문응답자들이 답한 응답의 평균을 살펴보면 안정적 수입의 확보는 평균적으로 73%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수입이 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할 것인가?

①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할 것인가

<표 54>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할 것인가

항목	빈도(명)	비율(%)
전혀 지속할 생각이 없다	1	1.3
지속하고 싶지만 어떨지 모르겠다	21	27.6
할 수 있는 한 지속하고 싶다	44	57.9
반드시 지속할 것이다	7	9.2
무응답	3	3.9
합계	7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향후 10년 후에도 현재의 소속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권활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할 수 있는 한 지속하고 싶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57.9%인 44명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고 전체의 27.6%인 21명이 ‘지속하고 싶지만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지속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2%로 7명이었다. 반면 ‘전혀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많은 응답자들이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거나 반드시 지속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현재 지급받는 적정하지 못한 활동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권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자의 향후 10년 후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각기 달리 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먼저 향후 10년 후 인권활동을 ‘전혀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와 ‘지속하고 싶지만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이유를 들어보았다.

②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유

<표 55> 10년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유(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	-
개인적 적성이 맞지 않아서	-	-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5	22.7
노동시간이 길고 개인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일이 너무 많아서)	6	27.3
주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	-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 때문에	12	54.5
장기적으로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11	50.0
기타	9	40.9

**총 응답자는 22명이다

향후에도 인권활동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문항에 답한 응답자 총 22명 중에서 54.5%인 12명이 적은 규모의 수입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볼 때, 활동비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활동가의 활동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총 응답자 중 50.0%인 11명은 ‘장기적인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향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나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의 단체에서 평균 약 4년 정도의 시간을 응답자들이 보냈을 것을 고려하면,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듯하다. 적어도 인권활동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홀로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활동의 전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노동시간이 길고 개인시간이 너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가 27.3%인 6명이 있었고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22.7%인 5명이 있었다. 이는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활동의 현장에 더 많은 활동가들이 유입되어야 하는 측면과 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도 시사한다.

이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을 적어준 응답자들이 많았는데, 기타의견으로는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활동의 영역을 옮기기 위해서’라는 기타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더불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상의 조건이 될지

모르겠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56> 10년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유(기타의견)

내용	빈도(명)
나이에 비해 활동할 수 있는 건강상의 조건이 될지 모르겠음	1
노후 생활의 준비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다.	1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3
변덕이 심해서	1
새로운 접근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전문성을 얻고자 하는데,	1
현재와 같은 인권활동이 아니라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고민 중	1
활동 영역/공간을 옮겨 새로운 경험을 쌓는 일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해본 일이 이 일밖에 없어서)	1
합계	9

③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57>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38	74.5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및 자부심	32	62.7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16	31.4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	3.9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11	21.6
기타	3	5.9

**총 응답자는 51명이다

향후 10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하거나 반드시 지속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이유를 들어보았다. 이 문항에 해당하는 총 응답자 51명 중 전체 74.5%인 38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밝혔고 62.7%인 32명이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및 자부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31.4%인 16명이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1.6%인 11명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하거나 적어도 지속하고 싶다고 답한

이유는 응답자들이 인권활동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이후에도 인권활동을 계속하겠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표 58>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기타의견)

내용	빈도(명)
경제적 이유	1
살이기 때문에	1
조직적으로 함께 느끼는 책임을 활동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1
합계	3

향후 10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계속 하겠다거나 지속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기타의견으로는 이 인권활동의 기반이 ‘자신의 살이기 때문이다’, ‘함께 책임지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다’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3장. 인권활동가의 활동과 삶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온라인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 인권재단‘사람’의 재정발전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거나 인큐베이팅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급상임/반상임활동가들이었다. 그러나 실제 인권단체들 중에는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 안에서 언급만 되었던 한 단체에만 소속되어 활동하는 활동가가 아니라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은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있는지 등등 온라인 설문조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담기 어려웠던 다양한 맥락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0명의 인권활동가를 직접 만나 그들의 활동과 삶의 내용을 상세히 전해 듣기로 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온라인 설문과 마찬가지로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소속되어 있거나 재정발전소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 가운데 활동영역, 활동경력, 서울 수도권 외 지역, 유급/무급활동가 여부에 따라 10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온라인 설문조사가 활동비를 받으며 상임, 반상임 활동을 하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급으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연구대상 중 13곳의 인권단체가 활동비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독립적인 사무실 없이 타 단체와 공간을 공유하거나 아예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인권단체들도 있었다. 이렇게 무급으로 타 단체와 공간을 공유하거나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두 명의 활동가를 선정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둘째,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권단체들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서로 직간접적인 연계를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의 경우 한 단체가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 위치하며 인권운동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두 곳의 인

권단체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셋째로 모든 인권단체들이 재정운영의 상당부분을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있어 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후원의 규모를 어떻게 늘려 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그 중에서 몇몇 단체들은 후원금 증액과 확장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비를 인상하며 인권활동가들의 복지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한명의 활동가를 선정하였고 또한 법인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중에서 한명의 활동가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넷째로 인권활동가들 중에는 한 단체가 아니라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소속단체의 활동비 지급여건이 좋지 않아 부족한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심층면접에서 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인권활동영역의 다양성과 인권활동가의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두 명의 활동가들을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2015년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진행되었다. 면접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 진행 동의를 구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평균 1시간 내외로 1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개 활동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사무실이 없거나 인터뷰할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10명과는 소속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 활동비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가능한 인권활동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 지 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검토, 분석하였다.

2) 면접대상자 개요

사례번호	활동영역	활동 경력	연령	부양 가족	지역	유급 활동가	소속단체 내 활동가 수
사례1	반전평화	3년차	45세	유	서울	유	반상임 3명
사례2	성소수자 인권	6년차	38세	무	서울	유	상임 2명
사례3	인권일반	4년차	35세	무	서울	유	상임 5명

사례4	인권일반	9년차	32세	무	대구	유	상임 1명
사례5	인권일반	6년차	32세	무	전북	유	상임 2명
사례6	국제연대	2년차	29세	무	서울	유	상임 2명
사례7	장애인인권	4년차	44세	유	서울	유	상임 3명
사례8	청소년인권	10년차	28세	무	서울	무	-
사례9	감염인인권	3년차	52세	무	서울	무	-
사례10	노동인권	2년차	37세	무	서울	유	상임 2명

2. 인권활동가들의 활동과 삶

1) 인권활동가의 길로 들어서다

① 당사자로서의 출발, 인권운동의 시작

심층면접 대상자 중 <사례2>와 <사례8>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당사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것이 인권운동의 시작한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례2>가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권운동의 출발이었다고 한다면, <사례8>은 자신이 청소년이었던 시절,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의 강제적 처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지역에 있던 청소년 운동단체와 연결된 것이 인권운동에 발을 디딘 첫 시작이었다.

인권운동 내에서 주요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인권활동가들 중 한 흐름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배제된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보편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 운동이 있다. 당사자 운동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자각하고,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 삶의 이야기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가시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싸움인만큼 인권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는 명백하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사회에 잘 드러내고 잘 살아나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운동이 인권운동인 셈이다. 더불어 그만큼 척박한 현실의 편견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쉽게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다. 물론 <사례8>의 경우처럼, 청소년 운동은 사회적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된 운동이라는 편견과도 싸워나가야 하지만 비가시화된 청소년 인권의 이슈를 알리는 데 있어서 청소년이란 당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음... 그니까 사실 그렇게 인권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그니까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걸 해야겠다고 했던 건 아닌데.....그런데..... 나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하는 것들이 나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적성에도 맞는 거 같고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에게 인권 운동이 되는 거죠. (중략) 굳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방식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보여 줄 데가 없을 때도 있는데 아직은 좀 그래야 되는 거 같고 그게 이제 내 삶의 생각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아요.(사례 2. 성소수자인권)

고등학교 때 전주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전북지역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학교의 여러 두발규제나 강제하는 것에 불만은 있었는데 그걸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집회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식의 운동이란 형태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학교 안에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중략) 근데 그때 모임에서 활동하는 거 인터넷에 올렸더니 지금 있는 단체의 사람들이 “두발자유 배지를 공짜로 줄 테니 함께 하자” 이라고 연락이 와서 배지와 전단지에 낚여서 이렇게 처음 알게 됐고... (사례8. 청소년인권)

②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

인권활동가들이 인권활동가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많은 경우에 활동가 개인이 갖고 있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주요하게 작동한다. 그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말한다. ‘아는 선배’ 혹은 ‘대학 때부터 알고 있던 활동가’들로부터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사례3>, <사례4>, <사례5>). 그만큼 개별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활동가들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인권단체들이 공채를 통해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5>를 보면, 당시 인권단체가 새로운 활동가를 들여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후원을 통해서 신입활동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유사한 사례로 <사례6>도 있었다.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제도를 통해 <사례6>의 단체도 여성인 활동가 한명을 추가할 수

있었다. 실제 인권단체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117만원(2015년 기준) 정도의 활동비를 만들려면 단체의 1만원 후원인 117명을 추가로 더 모집해야만 한다. 이는 보통 규모의 인권단체의 월별 사무공간 유지비에 근접하는 비용이다. 그만큼 유급활동가 한명을 단체에 추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인권단체의 현실이다.

알고 지내던 단체였고 그냥 제가 아는 선배들이 일을 많이 했었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중략) 한 달 정도 길게 여행을 다녀오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사무국장님이 그 선배님께서 시간이 제가 있으니깐 “사무실 아르바이트 같은 것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떤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하다가 음, 그냥 “이 다음 직장도 구하지 말고 같이 그냥 하자” 고……. (웃음) “상근으로 일하는 거 어떻겠냐” 제안을 하고 제가 고민을 해서 하게 됐죠. (사례3. 인권일반)

대학활동하면서도 이 단체(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알고 있었고, 당시 이 단체 활동가한테 인권교육 활동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같이 하다가 그때부터 활동하고 긴밀해졌던 거 같아요. 2010년부터 상임활동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례5. 인권일반, 전북지역활동가)

처음엔 취업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단체 쪽에서 월급이 100 이상이 되고 오라고 단체에서 실무자 구할 때 제안이 있었는데 여기서 5개월을 지내면서 친해졌고 여기도 사람이 없는데 다른 데 가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 상근으로 여기서 고용촉진장려금을 해준다고 해서 그 때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고용촉진장려금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잖아요. 초기에 대학생들이 못 들어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이용해서 대학생들 졸업할 때 흡수될 수 있게 그걸 많이 했었어요. (사례4. 인권일반, 경북지역활동가)

원래 막연하게는 미래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걸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교수님이 그러면 NGO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활동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중략) 인턴을 1년 정도 우선 했고요. 인턴을 일주일마다 한번 정도 나가는 자원활동이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중략)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여기 있다가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2012년도에 1년 하고 2013년에는 6개월 정도 지원금 받아서 하구요. (지원금은 강북여성인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경력단절여성 이런 분들을 회사에 지원금 줘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보통은 미술학원, 작으면 공장 그런 데도 많구요. N해 단체들도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6. 국제연대)

③ 새로운 인권활동가의 유입, 인턴제

새로운 인권활동가들이 인권단체로 유입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인턴제나 자원활동가 제도이다. <사례 6>과 <사례10>의 경우를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소개를 받거나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인권단체의 인턴제도, 자원활동가제도였다. 이 경로를 통해서 인권단체와의 인적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의 영역이나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과거 활동가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유입되었던 것과는 구분된다.

내가 활동가로 산다는 거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대학원도 가고 뭐 기자준비도 하고 그런데 자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활동단체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을 활동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이 아니라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직접 부딪혀서 현장에서 하면 되는데 왜 사이드로 자꾸 두나 정작 내가 즐거운 건 이거인데. 근데 사실 방법도 잘 몰랐어요. 자원 활동을 하다가도 활동가가 되기도 한다던데 저는 제가 찾아간 단체들이 활동가로 키운다는 그런 곳도 아니었고 말하자면 영세적인 곳인데 공채를 어떻게 하면 스펙으로 뽑을까 이런 단체도 사실 있었고 어떤 회사보다도 높은 토익점수와 학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있었고 그랬어요.(사례10. 노동인권)

④ 인권운동 현장에 안착하다

인권운동의 현장에 처음 들어온 이후, 인권활동가의 길로 제대로 안착하게 되었던 이유를 모든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물어보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례4>나 <사례6>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첫 활동 이후 느꼈던 소감들을 제대로 들려준다. <사례4>는 학교 다니면서 혼자라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곳이구나’를 느꼈다고 한다. <사례6> 역시 유사한 소감들을 밝혔다. 자신이 가진 힘은 작지만 사회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것 같고 ‘진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례6>의 강렬한 인상은 인권운동의 현장으로부터 위로와 안정감을 활동가들이 스스로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계기들은 이후 더 구체적인 인권운동의 동력들을 활동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사람들이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어주는 것에 대한 초반에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그 시간 동안 배우고 느낀 거 같아요. 같이 밥 먹고, 상담 받다가도. 상담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점심 시간되면 짬뽕 국물 몇 개 시켜서 밥해서 나눠서 먹고, 그 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왔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혼자 외톨이고, 혼자 밥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나이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이 사람들의 삶을 들으면서 여기 따뜻한 곳이구나.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힘은 없긴 하지만 뭔가 사회에 변화를 주려는 그 노력이 조금 씩은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짜 역사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사례6. 국제연대)

2) 인권활동가로서 산다는 것의 어려움

(1) 인권단체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인권운동의 출발은 치열한 인권의 현장에서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따뜻한 사람과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등등 활동가들 스스로가 각자의 계기를 찾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인권현장에서 서연은 긍정적인 인상과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인권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장시간의 활동시간으로 인해 개인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인권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산재한다.

① 경제적 어려움

· 품위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경제적 어려움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양태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사례4>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카드빚을 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카드사의 전화일 듯한 전화를 계속 회피하다가 서울지역 인권단체로부터의 연락마저 피했던 일화까지 소개했다. 이러한 예는 극단적인 경우

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드물지 않았다. <사례1>은 현재 소속단체로부터 60만원의 반상근비를 받고 있는데, 60만원의 활동비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들간의 반상근을 추가로 더 하고 84만원의 활동비를 더 받아서 총액 144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신은 싱글에 부양가족이 없고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니와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자신의 적은 활동비 수입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1>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경우가 아니면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말도 더했다.

한번은 빚에 너무 쪼달릴 때가 있었어요.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전화가 와서 몇 달이 된 거죠. 왜냐면 월초가 되면 카드사에서 독촉전화가 오니까 02로 뜨면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앞에 02가 뜨면 서울 카드사 전화번호니까 한번 인권교육센터 등에서 행사 때문에 참여여부를 묻는다고 전화왔는데 내가 계속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일부러 껐죠. 독촉전화인 줄 알고.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60만원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싱글에. 부양가족이 없고 월세나 이런 게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상황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서울에 살면서도 특수하게 그런 친구들 아니면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례1. 반전평화)

· **둘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야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 중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사례7>이 유일하다. 인권활동가들 중 결혼을 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가들을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은 싱글인 활동가들과 달리 더 어려울 수 있다. <사례7>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례7>은 남편이 활동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려움은 덜한 편이라고 한다. 종종 농담으로 결혼한 커플이 있다면 둘 중 한명은 제대로 벌지 않으면 활동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남편이)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덜 하죠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엔 한쪽은 제대로 돈을 벌어야... 벌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하거든요 (중략) 결혼도 어렵든 경제공동체가 되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한 쪽이 저임금을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쪽은 제대로 직장을 다녀야 된... 다녀야지만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 많이 하죠 (사례7. 장애인 인권)

· 결혼을 꿈꿀 수 없다, 연애할 돈도 없다

심층면접 대상자 중 싱글인 경우, 활동가들이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활동비만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거나 할 때, 홀로 생활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부양비가 발생하게 되는 셈인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싱글인 심층면접 대상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커플이 모두 활동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명은 인권활동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애인이 없는 활동가들은 이 활동비로 연애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실제 <사례3>은 결혼을 앞두고 커플인 자신들 중 한명이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사례5>는 사귀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면서 아이도 낳길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사례4>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결혼에 대해 일정정도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만약에 아이가 생기고 돈이 양육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나라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이런 NGO활동가 말고 다른 일을, 양육비를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사례3. 인권일반)

여기 젊은 활동가들 모이는데 가면 다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걸로 결혼할 수 있겠냐. 이 돈으로는 연애도 못 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며 애를 어떻게 낳으며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을 보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낳아보고는 싶은데요, 기를 자신은 나 한 몸 건사하기도 책임지지 못 할 일을 하기엔 그래서. 안정되면 낳고 싶은데 우선 지금으로서는. (사례6. 국제연대)

저는 안 했는데 이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휴가를 생각 못 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임신과 출산 이런 거는 그 기한이 없어서는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설마 그런 걸 기한을 안 주겠어요. 그죠? 법적으로 있는 건 당연히 지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사례10. 노동인권)

② 너무 장시간의 활동, 소모되는 에너지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말하는 활동의 시간은 단체내의 내규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대체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활동시간은 그보다 많았다. 대체로 단체에서 벌이는 행사나 회의는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주말에도 출장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해서 주중에 다시 월차를 낼 수 있는 조건도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인권활동가들은 장시간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별 내규에서 정해진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활동한다고 해서 별도의 개인시간이나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은 시간으로 대략 10시부터 6시로 되어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주말도 출장이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따로 수당이라든지 주말에 일했으니깐 주일에 쉰다든지, 뭐 월차 이런 건 잘 되어 있지만, 주말에 일했으니깐 주중에 쉰다. 이런 게 잘 되지 않죠. (사례3. 인권 일반)

오전 10시 출근해서 19시까지고, 근데 사실 이게 회원단체가 제일 애매한 게 저희는 19시 이후에 그런 회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운영진들이나 그런 회원들과의 사업을 위해서 회의들이…… 거기서 다른 연대단체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출근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퇴근 자체의 시간이 사실 되게 이제 그…… 정확하진 않은 거죠 야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례2, 성소수자 인권)

당연히 부양해야 할 자녀나 가족이 있는 경우의 <사례7>은 퇴근 이후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고도 다시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활동한 시간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아무리 소속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자 해도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실제로는 월차를 쓰거나 하루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 심지어 <사례7>은 하루라도 아프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거의 아침에 한 9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10시에 퇴근하거든요 저녁에... 그니까 애들도 거의 방치상태고 오히려 직장생활 하는 남편이 저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을 챙겨 먹이는 상황이 계속 되고... 일이 이제 여기서도 끝이 안 나서 집에 가서도 또 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이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제 이걸 되게 낮은 거죠 (사례 7. 장애인 인권)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건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차를 거의 못 써요 이게 하루 휴가 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는 월차를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오늘 날씨 추운가 했더니 사람들이 안 출대요 오늘... 그래서 나 왜 출지 했더니 감기 걸리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억 아프면 안 된다 진짜 하루라도 아프면 안 된다 (웃음) (사례7. 장애인 인권)

그만큼 인권단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의 활동가가 해내는 몫은 매우 크다. 단체 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아질수록 한 개인이 감당해내야 하는 업무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긴 활동시간에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채, 활동가들의 활동경력이 많아지면 활동가들의 에너지는 쌓이기보다 소진되고 만다. 그러다보니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심층면접 대상자의 경우, 절대적인 업무의 양으로 인해 아이를 방임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고도 말한다.(<사례7>)

소진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활동 소진된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개인이 아니면 안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 같아요. 단체를 봐도 그렇고, 지역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없을 때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한테 과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애들을 방임해서 키워요. 근데 저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계속 아이들의 삶에 내가 영향을 미치고 뭔가 아이들을 단속 하면서 키우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여기서 일하기는 어렵죠. (사례7. 장애인 인권)

결국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권활동가로서 살아가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품위있는 삶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가의 삶을 선택했지만, 금전적, 시간적으로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진되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순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활동가 본인이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삶이기도 하다.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의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이 부족한 모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내 품위는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죠.

적은 돈에도 뭔가 우아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활동 같은 것도 여기서 계속 소모되는 삶임에도 내가 알아서 채워서 여기에 뭔가 또 투여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 각자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사례10. 노동인권)

③ 미래에 대한 불안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토로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서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사례5>, <사례4>는 모두 삼십대의 나이에 들어선 활동가들인데, 두 사람 모두 가족 중 일부가 크게 아플 것을 염려하고 있고 또 실제 부모님이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 상태로서는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아무래도 3인 가구이다 보니 가족 중에 한 명이 입원을 해야 했을 때 나갈 비용이.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암이라든지 혹은 심각한 4대 질병?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걸렸을 때 그 때 걱정이 돼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20대 때는 사실은 빚도 모르고 하고 싶었고, 젊었고, 건강했고, 우리 부모님도 젊었고 지금 제가 30대 접어들면서 올해 서른둘이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파서 병원 다니시고 아빠가 일을 그만두셨고, 나도 아파서 계속 병원 신세를 많이 지면서 병원비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10년 뒤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사례6>처럼 이십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에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뭉뚱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사례8>은 소속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보조를 일부 받고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글을 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큰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병 걸리고 그런 것들? 지금은 제가 이 돈 받아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살 수 있지만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례6. 국제연대)

불안한 건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들이죠. 최근에는 칼럼 쓰는 것이니 이런 저런 경제적인 거랑 병행하면서 하루에 5시간 미만을 계속 자면서 시간을 쥐어짜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내 몸과 돈이? (사례8. 청소년 인권)

〈사례2〉의 경우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사례2〉는 노후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으려 했다. 노후보장을 활동비를 더 받아서 더 많은 경제적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볼 순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활동가들은 부족한 경제적 대비책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노후에 대한 대안적 삶의 모델을 찾기도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활동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나 개인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실 뭔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나 당위성이 있어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으면 너무 힘들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고 (사례2. 성소수자 인권)

노후보장이라는 것도 사실 그니까 사실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데 어떠한 노후 보장 이라는 것들에 있어서 사실 이게 꼭 돈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활동가들이라면 좀 그거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돈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기개발 할 수 있는데 더 관심 있어 할 거 같고, 근데 이제 안식년이 좋은 거는 그걸 시간도 주고 돈도 주는 거잖아요. (사례2. 성소수자 인권)

(2) 소외받는 인권이슈

이번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에는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은 하고 있으나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활동가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8〉과 〈사례9〉의 경

우가 이들에 해당한다. 이들이 소속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소속단체가 유급상임활동가의 활동비를 지급할 만큼의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8>과 <사례9>은 실제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8>은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청소년 운동을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운동이라고 보는 편견 때문에 청소년 이슈 자체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에 뿌리를 두고 청소년인권운동이 진행되는 경향이 짙다보니 단체 내에서의 사람의 교체주기도 빠르다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 회비를 걷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단체의 재정상황도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이렇게 청소년 인권운동 이슈에 대한 인식의 부족, 청소년을 비경제인구로만 보는 사회적 시선, 더불어 친권자와의 갈등, 단체 내에서의 활동가들의 빠른 교체주기 등의 문제로 인해 <사례8>이 몸담고 있는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의 재정상황은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 특히 활동가의 교체가 빠르면, 단체 내에서의 지역과 여타의 사회운동과의 연대하는 경험도 축적되기 어렵고, 동시에 후원금을 확보할 다양한 경로를 갖지도 못하는데, 회비를 낼만한 회원의 확보도 어렵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청소년 운동이 사람 교체가 빨라요.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게 되면 80~90%는 떠나니까 교체가 빠른 속에서 혼자 10년을 남아있는 거기서 받는 압박과 이제 또 뭔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운동 안에서 그래서 느끼는 어떤 이제 떠나야 한다는 이런 압박도 있고 너무 내가 강한 권위와 권력이 암암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중략)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주는 우울함도 있고 두 번째는 이슈가 잘 이해받지 못하는 것. 운동 안에서도 다른 운동이랑 부딪히게 되고 청소년 운동의 감성이나 논리나 관점이 여전히 운동의 부족이기도 한데 보금되어 있지 않고 뭔가 딱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연대 활동 같은 거 할 때 자잘자잘하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사례8. 청소년 인권)

아무래도 청소년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 회비 논의도 종종 하는데 회비 걷어야 하지 않느냐고 재정유지하려면 회비 3천 원을 감당을 못해서 이런 재정적 문제와 여러 가지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친권자와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가장 큰 극복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죠.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사례8. 청소년 인권)

〈사례 9〉는 HIV/AIDS감염인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감염인 인권의 이슈는 인권운동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못한 소외된 인권이슈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동한다. 감염인을 바라보는 공포와 혐오감 어린 사회적 시선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염인 인권단체를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당사자인 감염인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꺼린다. 즉 사회적 커밍아웃이 전제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드러내고 감염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도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감염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발언의 수위를 높여 감염인 단체로 역량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쉽게 말해, 누군가 나서서 더 많은 후원을 조직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체의 재정상황은 회복되기 어렵고 상임활동가를 마련할 수도 없으며 이는 다시 특정 시기(예를 들어 매년 12월 1일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감염인 인권주간과 같은 특정시기)를 뛰어넘어 상시적인 인권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인권이슈를 알리는 데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핵심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공포나 혐오감 이런 게 첫 번째인데 아직도 99프로는 그것이거나. 공포, 혐오감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깨부수려고 하지 않는 거. 본인이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파를 시도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많이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쳐버리고 내 운명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런 특히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보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드니까 가장 딜레마지. 관심을 없어 하지. 외면하는 거지. (사례9. 감염인 인권)

커밍아웃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앞에 나서는 거. 나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뒤에 숨잖아요. (사례9. 감염인 인권)

상근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봐요. 단체인데 공중에 떠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르르 왔다가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힘들죠. (사례9. 감염인 인권)

〈사례8〉과 〈사례9〉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인권 이슈가 사회적 편견과 싸워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 뿐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상임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권단체가 상임활동가 한명을 만들어내

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원과 지지가 요구된다. 이렇게 단체가 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맞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펼쳐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후원인들을 모어나갈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결국 인권운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과 활동가의 역할, 더 많은 후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보호는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 수레를 돌리는 톱니바퀴 중 어떤 자원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의 활동기반을 갖추기 어려워진다.

(3) 인권운동 소외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

심층면접 대상자 중 <사례4>와 <사례5>는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이다.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사례5>는 전북지역의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현재 소속된 인권단체에서 상임활동가는 <사례5>를 포함하여 총 2명이다. 2명의 상임활동가는 단체의 운영이나 총괄을 나누어 맡으면서 지역의 연대활동과 더불어 인권교육 코디와 진행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사례6>은 경북지역의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현재 소속단체에서 2명의 상임활동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단체 후원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단체 운영금을 제하고, <사례6>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나면 다른 한명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다른 한명의 활동가는 개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활동을 대체할 만한 인권활동가들도 지역에는 많지 않고 그 활동가들을 지원할 만한 단체의 재정상태도 아니다.

CMS가 한 9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또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략) 거기서 월세 빠지고, 공과금 빠지고, 제 활동비를 주려고 하면 60만 원이라 책정되어 있는데 바로바로 제때 못 주시니까 정기적으로 40만 원 정도 주시고 다음 달되면 20, 며칠 지나면 20.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죠. 저만 활동비를 받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 선배는 매일 아침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시고 2-3개월 한 번씩 설문지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대학 때부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그 알바를 하셨는데, 그게 2~3개월에 한 번씩 있어요. 그걸 하면 2-3

일을 빼야 하는데, 20-30만원 받는데요. 그걸 해봤자 얼마나 돼요. 얼마 전에 활동보조 하던 것도 끊겼어요. (중략) 사실 너무 미안해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사례5〉는 올해 5년차 경력의 인권활동가로 안식월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안식월을 쉽게 쓸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수준의 활동력을 단체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활동가가 필요한데, 〈사례5〉가 안식월로 활동에서 빠지면 단체의 활동력은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게 우리 단체에서 현재 상임활동가가 2명입니다. 만 5년 차 활동가가 6개월 안식월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올해 대상이거든요. 안식월을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경력 있는 사람이 1명 남는 건데 신입 활동가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회원확대사업은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있는 계속해오던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게 역량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사례4〉와 〈사례5〉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인권단체의 수나 활동가의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인권 이슈도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이슈들에 다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당연히 지역의 인권 활동가들이 담당해야 하는 활동의 양은 늘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시기별로 진행되는 인권이슈들이 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면별로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에도 동참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사례5〉가 말하듯이 지역 내에서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더구나 활동가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수자 인권의 영역은 장애인 운동이나 홀리스 운동 정도인데, 이 영역들은 이미 지역의 행정관청에 연계되어 복지체계의 일부로 흡수된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에 있으면 다 해야 하거든요. 서울은 뭐가 좀 나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업무, 영역이 있잖아요. 반차별분야, 뭐 주거권분야. 이런 게 있는데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다 해야 해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역 내에서 소수자 인권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관하고 연결된 게 이주민 관련해서 그래도 지원체계가 있긴 한데 시민운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관의 복지체계인 거죠. 장애인운동은 다행히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하는데, 청소년

이러든지 성소수자, 이주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긴 해요. 많지는 않지만 홈리스 분들이 분명 있는데 서울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영역별 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을 못 하는 게 많이 아쉽죠. (사례5.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그래서인지 <사례5>는 다양한 인권영역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성하기 쉬운 서울지역의 인권운동 현실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면서 지역의 인권운동이 안고 있는 현실의 열악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인권운동 단체로서 참고할만한 모델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지역의 인권운동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에서 인권운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반을 근시일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다.

서울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권영역이 있는데 정보인권, 소수자인권, 장애인권, 학생인권 등 영역별로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공동으로 또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쉽잖아요.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 한정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단체를 찾아가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활동하면서 한계인 것 같아요. 또 비슷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동료적 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제가 처음 인권활동가대회가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서울 쪽 활동가들은 이미 긴밀하게 그런 활동들을 만들기도 하고 개별적인 친분 관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 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잖아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모델이 별로 없어요. 지역 인권운동 단체로, 가령 좀 더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북도라는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혼자 혹은 단체 홀로 답을 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지역과 인권운동으로서의 전망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인권운동단체로서, 인권운동가로서의 개인의 전망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항상 갈급해요. 저희는 그런 트렌드를 잘 몰라요. (웃음) 가끔 활동가대회에 가서 듣고 있으면 멍한 데, 인권운동이 진화하고 분화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리멸렬한 거 같아서 (웃음)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운동에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3)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

인권활동가들이 소속된 인권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활동비는 앞서 살펴본 통계자료에

서도 확인하듯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적은 수입을 통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인권활동가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지출의 규모를 줄이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더 하거나 등등의 방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① 덜 쓴다.

인권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사례3>이 이야기하듯이 그 활동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처음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받은 활동비를 확인하고 <사례3>은 자신의 활동비가 ‘다 들어온 것이 맞나? 더 들어올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적은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줄여나가고자 했다.

<사례4> 역시 ‘생명유지 정도’만을 할 수 있는 활동비로 인해 옷은 사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을 받거나 여행을 하고 공연을 본다는 욕심은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례6>은 소비를 덜 하는 방식을 몸에 익히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아무리 지출을 줄인다고 다짐을 하고 몸에 익힌다고 해도 그 씬씀이의 습관이 일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례3>은 활동을 시작하고 ‘돈을 모으는 것 뿐 아니라 많이 쓰면 안된다’는 각오를 했지만 쉽게 씬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런 인권활동가들의 자구책은 수입의 규모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활태도와 습관을 만들어나가는 자구책의 일환이다. 일부의 활동가들은 이를 반자본주의적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이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 아니다.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건데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각오도 하고 그랬는데, 씬씀이가 확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각오를 해도, 그래서 처음에 또 뭐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그렇게 활동이나 생활이 시작되니깐 막막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이거 다 들어온 거 맞나? 더 들어올 게 있는 거 아니냐. 첫 월급 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례3. 인권 일반)

어쨌든 지금 금액이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거의 비슷한 데 먹고는 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뭘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뭐 크게 옷을 사거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겠다. 교육하고 싶어도, 여행하고 싶어도 못하겠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못 보겠어요. 비싸서. 뭘 하고 싶은 것을 욕심을 내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저는 오히려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 사정 아 니까 사 달라고도 안 하고 돈 내라고도 안 하고. (웃음) (사례6. 국제연대)

사실 민노총 실질임금 정도에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중략) 민노총 실질임금에 같 으면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으로는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 계부를 쓰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항목이 술값? (웃음) 뭐 이런 걸 거예요. 전혀 차를 사길 하나 무슨 옷을 많이 사길 하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중략) 활동가들 이 자본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긴 할 텐데 (중략) 민노총 실질임금과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사이에 어느 정도 되 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임금에 접근하려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는. (사례 1. 반전평화)

②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한다

〈사례1〉은 유급 반상근활동가로 두 곳의 단체에서 반상근 활동비를 받고 있는 인권 활동가이다. 주 3일은 평화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60만원의 반상근비를 받고 있고 주 2일은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반상근비 84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사례 1〉은 이미 1998년 이후부터 반전평화운동을 해온 오랜 경력의 활동가이고 현재 소속된 평화운동단체에서 활동한지는 3년째가 된다. 〈사례1〉이 소속된 평화운동단체는 3명의 반상임 활동가가 단체의 운영과 사업 총괄을 맡고 있고 모든 재정은 후원회원들의 회비 로 충당되고 있다. 후원금으로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쓰고 있어 서 단체 재정 내에서 활동비를 매년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이 더 높아지기 어 렵다.

단체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로 되고요. 한 달에 삼백만 원 가량 들어와요. (중략) 거기 서 50% 좀 안되게. 지금은 50%가 넘었겠다. (반상임 활동가가) 셋으로 늘어서. 올해 부터. 둘이 있을 때는 50%가 좀 안 되게 50% 정도 가량을 활동비로 나가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썼어요. 그리고 대신에 국제행사를 한다든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굵직 굵직 행사가 단체재정에서 충당이 안 되면 그때는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펀드를 받아서 진행하죠. (사례1. 반전평화)

(단체 재정이) 들어오는 거에서 쪼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를 60만원씩 받거든요. 셋이. 매년 활동비를 의논해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 이상하다 (웃음) 몸값

을 높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라 넘어가질 않죠. 그 내에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사례1. 반전평화)

〈사례1〉이 처음 현재의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반상근 활동비는 35만 원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받고 있는 반상근 활동비는 액수 면에서 두 배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러나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일 상근을 할 수 없는 것이 단체의 재정 상황이다.

처음에 전일 상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12년 시작했을 때 제가 35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은 뭐 더블로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때 (중략) 다른 곳 번역하는 곳, 아바즈라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도 주3일 일하는 게 지금 다른 단체에서 받는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나 그랬어요. (사례1. 반전평화)

〈사례1〉이 소속된 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민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근시일 내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례1〉이 지적하듯이 후원금이 아닌 형태로 단체의 재정을 더 충당한다고 해도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인권단체 사업지원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은 대체로 소위 ‘정산하기 쉬운 구조로 짜여져’ 있고, 장기적인 지원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특정 사업별 지원에 중점에 두고 있어서 단체들 입장에서는 사업비 외에 단체 운영 및 인건비 등 사업지원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례1〉이 설명해 준 해외의 국제단체 지원의 경우,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믿고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의 인권단체 지원 사례는 국내 민간단체 및 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고(국가지원 재정운영)는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고는 정말 운동에서 필요한 것과 상관없이. 으...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정산하기 좋고 생색내기 좋고 이런 걸 하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그렇죠. 약간 부러운 것은 뭔가 국제단체 같은 것,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속해있는 국제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장기적으로 5년, 4년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지원을 해주어요.

종교재단 같은 데에서 사업별로 해서 돈을 줘서 그 사업 말고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자체에 지원을 해주어서 프로그램에 인건비도 나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이나 여행도 다니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서 다 충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1년 사업에 드는 예산을 다 그 프로그램을 믿고 지원을 해주기 때

문에 뭔가 연속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운동성도 있고 다 담보가 되죠.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한 군데 본 데는 그랬어요. 저런 것은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사업은 사실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이 없는 사업을 만들어내서 뒤를 돌려서 인건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례1. 반전평화)

그러나 <사례1>이 말하듯, 국내 인권단체의 현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권단체 지원프로그램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정부, 민간의 비영리재단 지원에 어떤 사업지원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국가에 단체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사업지원을 낼 곳이라도 있다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권단체들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원의 확대가 유일한 방법이 된다.

저희 단체는 지금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 등록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늘 지원받았던 게 (중략)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프로그램으로 한번 아름다운재단에 지원을 냈었어요. 3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3년간 운영계획을 해서 냈는데 그게 떨어졌거든요. 낼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하는 건 순전히 서울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얻자는 취지였었던 거예요. (사례1. 반전평화)

<사례1>처럼 복수의 단체에서 반상임 활동을 번갈아서 하게 되는 경우, 한 단체에서 상임활동가로 일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주 3일 활동을 한다고 해도 주 3일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1>은 활동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한 곳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만큼의 단체의 재정상황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반상임, 반상임 활동을 하면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반상임 활동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이상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를 이상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주일 일하는 양을 줄이려고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상임으로 한 단체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 단체에서 만약에 활동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은 한 단체에서 일하는 게 저는 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중략) 그런데 지금은 요원하죠. (사례1. 반전평화)

③ 그나마 나은 여건 속에 돈을 모은다.

〈사례 5〉와 〈사례1〉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딱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활동비만으로도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으며 〈사례5〉와 〈사례1〉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스스로 준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매달 월세를 내는 등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진 117만원 정도의 활동비(〈사례5〉)만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사례1〉은 그나마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활동비를 보충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지출하고 남은 돈을 모으고 있다. 미래에 어느 시점,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사례5〉) 혹은 여행을 떠날 준비(〈사례1〉)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제가 활동하면서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었는데 주거가 된다는 점, 빚이 없다는 점, 두 가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고, 개인이 제 삶을 유지하는 데 활동비를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저도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 차원에서 적금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빚이 없고, 물론 살다 보니 가족 때문에 대출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학자금 대출이 없어서 채무가 없으니까 고박고박 나갈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거 같아요. (사례5. 인권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 싱글이거나 더 부양가족이 없고 월세나 이런 게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비를 받아도 상황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살면서도 특수하게 그런 친구들 아니면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단체가 올해부터 후원회비 증액운동서부터 뭔가 좀 더 활동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일단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 민노총의 실질임금까지 올라가야 우리같이 뭐 정말 동수저 같은 거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지요.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1. 반전평화)

④ 생계를 위해 일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 중 〈사례4〉, 〈사례6〉은 소속단체에서 제공받는 활동비가 부족하여 활동 이외의 다른 일을 하기도 했었다. 〈사례8〉은 소속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따로 해야 한다. 이렇듯 활동가들이 자

신의 활동으로부터 지급되는 돈 이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례4〉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로, 6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었으나 그나마도 단체의 상황 상 60만원의 활동비 지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간혹은 주거비 지출로 인해 몫돈이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카드빚을 지거나 공장엘 다니거나 장애인 활동보조 및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었다. 인권활동 외에 생계를 위한 일을 추가로 하면서 서러움이 생기기도 했었다. 〈사례6〉은 활동비 이외에 과외를 하면서 수입을 보충하였다. 과외로 45만원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었기에 자신이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나마 현재는 과외를 그만두고 수입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출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사례6〉은 소속단체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았고 주거비도 하우스 쉐어를 하고 있어 적게 들었다. 〈사례8〉처럼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가 없기에 생계를 위해서 별도의 수입을 끊임없이 거두어야 한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의 일도 병행하면서 다방면의 수입을 거두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었다. 〈사례9〉 역시도 〈사례8〉처럼 활동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생계를 위한 일을 지속하고 있었다. 〈사례9〉는 주중에 한번 일을 쉴 수 있었는데 자신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갑갑해했다.

공장에 가야하고 활동 보조해야 하고 무슨 알바도 해야 하고 이럴 때 있어서 물론 그 경험도 좋은 경험이지만 주중에 활동하고 또 주말에 토요일에 활동보조를 하고 나면 되게 울컥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녁에 돌아올 때 생기고 공장 갈 때는 공장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경험이지만 가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 또 울컥하고 그랬었어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저와 함께 일하는 활동가는) 매일 아침 활동보조 일을 하시고 2~3개월 한 번씩 설문지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대학 때부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그 알바를 하셨는데, 그게 2-3개월에 한 번씩 있어요. 그걸 하면 2~3일을 빼야 하는데, 20-30만 원 받는데요. 그걸 해봤자 얼마나 돼요. 얼마 전에 활동보조 하던 것도 끊겼어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제가 작년도까지는 과외 이런 것 하면서 그래도 부수적인 수입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바뀌면서 좀 쪼들리긴 했었는데 쪼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지출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6. 국제연대)

정기적인 수입은 한겨레 칼럼 쓰는 거 15만 원. 원고료 교육비 등등해서 한 달에 대충 한 2~30 벌고 그거에 플러스 부족한 거는 부모님께 생활비 받았고 이번에 들에서 이번 달부터 월 60을 받으면서 청소년자립지원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례8. 청소년 인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가 많았다.(<사례6>, <사례3>, <사례9>, <사례1>) <사례6>은 계속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잠시라도 자신이 머뭇거리고 확실치 않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자신이 인권활동을 계속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이었다. 인권활동가로서 이제 막 2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있는 <사례6>은 다른 인권활동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이 활동을 잘 하기 위해 무언가 더 교육을 받거나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사례9>는 활동비를 받을 수 없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떠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좋고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당사자 운동의 주체로 지속적인 활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례3> 역시 예상하기 힘든 인생의 변수들을 어떻게든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자신의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례1>은 외국의 평화단체들처럼 100년 동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단체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했다. 이렇게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미래에 어떤 전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활동비를 비롯한 다양한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들이 펼쳐나갈 꿈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저는 (온라인설문에서) 일단 당연히 하고 싶다고 쓰려고 했었는데 약간 머뭇거렸던 이 유가 제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될 거를 가정하고 약간 하고 싶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

런 문항에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 고민이죠. 하고는 싶은데 자꾸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좀 안 받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하고는 싶어요. 계속. (사례6. 국제연대)

지금은 (일터에서) 목요일만 쉬니깐 아쉽죠. 내가 왜 이걸(이 활동) 하나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병이 생겨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외로움부터 해서 병이 생겨요. 나와서 계속 떠돌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일단 나오는 것부터가 좋은 거예요. (사례9. 감염인 인권)

생각은 그냥 계속하고 싶은데 일을, 다만 최대한 계속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살면서 약간 변수들... 제가 또 모르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결혼 계획하면서 그냥 아이를 갖는 일이라든지 아직은 서로 조금 안 갖는 거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례3. 인권 일반)

요즘의 외국의 평화단체는 대부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단체들이 많은데 앞으로 5년 있으면 다 센테니얼 하거든요. 100주년, 100주년 하는 단체 많아요. (중략)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사례1. 반전평화)

물론, 인권활동가들이 지속적인 활동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인권단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해결되어야 할 다른 중요한 과제들도 있다. <사례5>가 안정적인 활동비의 확보 외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인권운동의 전망에 관한 것이다. 인권운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전망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인권활동가로서 지속가능한 활동의 동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사례10>은 오랜 경력의 인권활동가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들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활동가가 나이가 들더라도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을 전했다. 이는 인권활동가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활동의 조건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활동가 스스로 낡은 틀이나 관습이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권활동가로서 활동비가 50%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결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나머지 50%로는 활동가로서의 전망인 거 같아요. (중략) 지역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위치는 무엇일까. 그 때 그 때 요청받은 것을 해결하면 되는 건가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 의제를 확산시켜나가는 건가. 저희 단체가 더 애매한 게 뭐냐면 영역별 인권운동단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인권 일반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활동비가 늘어나도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권활동가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오래된 인권 운동가가 얼마큼 정말 괴물이 될 수 있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조직을 만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거 때문에 나는 계속 남아있는데 새로운 물에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있어요. 지금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뭐……. (사례10. 노동인권)

3. 인권활동가들이 말하는 소속단체의 현황

① 그래도 최저임금을 맞춰야 채용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사실 중 하나는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소속된 각 영역별, 지역별, 현장별 인권단체들이 최소한의 수준이긴 하지만 최소임금 수준의 활동가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나 단체에서 개인 활동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입활동가의 유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채용공고도 낼 수 있다. <사례1> 적어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임금만큼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신입활동가들을 원활하게 유입시킬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에 적은 활동비로도 활동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신입활동가들이 유입은 요원해진다.

지금은 사실 채용공고 같은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60만 원으로 채용공고를 내겠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채용공고를 내서 건강하게 경쟁을 해서 우리 단체에 딱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서로서로가 지지가 되고 이러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1. 반전평화)

그러다보니 각 인권단체들이 신입활동가들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추어 117만원(2015년 기준)이란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다. <사례7>이 말한 것처럼 인권활동가들이 인권단체 내에서 높은 강도의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인권단체들은 활동비를 제때에 밀리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로는 신입활동가들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현재 대졸자의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 등의 빚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홀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구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 주거비 부담과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신규인력들이 인권운동 진영으로 진입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죽을 쑤든 밥을 쑤든 그래도 최대한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보면 사실 일의 강도는 굉장히 높고 어디나 일의 강도는 굉장히 높는데 거기 그것과 임금에 대한 고민들이 딱 이제 인권운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서 고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대학생들 요즘 학교 다니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몇 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실 일하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는 어렵잖아요. 최저임금으로 갚아나가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사례7. 장애인 인권)

그러다보니 인권단체가 지급하는 활동비 수준을 우선 상향시켜놓고 그 부족분을 향후 메꿔 나가는 공격적인 방식의 단체운동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때, 상향시키고자 하는 활동비의 수준의 첫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이다. 그동안 인권단체 내에서 지급했던 활동비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의 예이다. 그러나 활동비 액수를 지급히 높이겠다고 계획한다고 해서 인권단체 재정의 바탕이 되는 후원금을 단시일 내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활동비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든, 수당을 포함하여 활동비 총액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든, 활동비로 지출하던 지급분이 늘어나면 단체운영에 쓰이던 다른 부분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단체 운영의 다른 지급분을 줄이거나 <사례 6>처럼 단기간이라도 활동비 지원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기도 한다. <사례6>의 단체는 여성인력센터로부터 활동가 한 명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100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제하고) 구십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새로 활동가를 뽑으려고 하니까 최저임금은 맞춰야겠더라고요.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고는 사람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민망해서 임금을 공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맞추게 된 거죠 (중략) 임금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해마다... 다달이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현, 실행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시점에는 억지로라도 좀 임금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출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사례7. 장애인 인권)

2015년 법적 최저임금을 맞췄고, 기본급이 112만원이에요. 우리 단체가 3년 전부터 통신비를 지급했어요. 활동가들 전화를 많이 사용하니까 통신비 5만원 포함해서 월 117만 원이에요. (대신) 식비 지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야 어쨌든 단체 운영 상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식비의 경우는 재량껏 조정할 수 있잖아요. (중략)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법적인 최저임금이란 것 때문에... 인권활동가들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활동들도 많고 한데. 그걸 딱 최저임금이라는 선으로 맞춰버렸을 때 약간의 공백들이 있긴 하죠.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도 하고. (중략)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올리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덕거리는 건 있는 거 같아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일단은 제가 (이 단체로) 오기 전에는 계속 그냥 기존 활동가로 쪽 가고 있어서 임금에 대한 고민을 약간 그대로 둔 것 같은데 젊은 활동가가 오니까 제대로 처우를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딱히 없었고 임금에 대한 체계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강북여성인력센터에서 계약하면 거기도 끼게 되니까 거기도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임금이 잡혔고. (사례6. 국제연대)

심층면접의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실 중 한 가지는 인권단체의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활동가의 몫이기 때문에 활동가들 스스로 단체로부터 적게 받고 적게 쓰자는 태도로 일관했던 측면이 과거에 있었다면, 단체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많아지면서 단체 내의 개별 활동가들의 활동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점차 신입활동가의 유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활동비 체계를 갖추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기존 활동가들, 특히 단체의 운영과 재정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은 단체운영자의 입장에서 신입활동가들의 처우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② 실업급여를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인권단체 내에서의 활동가들간의 관계는 평등한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가 전제된 4대 보험을 단체 내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단체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의 4대 보험 적용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사례5>의 단체는 고용주-노동자 관계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유는 하나였다. 활동가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활동가 개인이 안게 될 불안이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의료보험의 자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안한다치더라도 누군가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는 받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4대 보험 가입을 확정지었던 이유였다. 이렇게 인권단체의 내규와 원칙은 소속 활동가 개개인의 의견과 가치관에 의해 수많은 논쟁 끝에 만들어진다.

일단은 4대 보험은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중략) 고용주와 노동자의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건 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건 실업급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단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순간 바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제일 불안한 거 같아요. 저희 단체에서 처음으로 4대 보험을 도입한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에 도입했던 거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실업급여는 있어야 한다. 활동가 개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단체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컸어요.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③ 최저임금을 넘어 실질임금을 만들 수 있을까?

인권단체의 성장은 그 단체의 활동이 외부로 잘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단체의 활동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로 인권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는 만들어지고 활동가 수의 확대나 개별 활동가의 안정적 생활보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궁극에는 활동비가 최저임금 수준을 뛰어넘어 실질임금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인권운동의 의지만 있다면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사회가 인권사회의 시작이 아닐까?

2012년 시작했을 때 제가 35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은 뭐 더블로 댔 거죠. 그러니까 더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 단체가 올해부터 후원회비 증액운동서부터 뭔가 좀 더 활동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일단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 민노총의 실질임금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뭐 정말 동수저 같은 거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지요.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1. 반전평화)

④ 결국은 후원금 모금으로 귀결되는 현실

단체의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후원금 모금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모으는 것이 정부나 민간단체의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받은 사업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원 외에 자금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돌아오는 현실은 인권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일들을 펼쳐 보여서 더 많은 후원인을 만들고 모아내는가이다. 바로 인권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근자로서 사무국장으로서 활동비에 대해서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결국엔 또 운영상황 지금 재정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은 거고 근데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 결국 우리가 후원을 많이 조직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 부족한 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금이나 일로써 어떻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의 생각으로 빠지더라고요. 고민을 하다보면. (사례2. 성소수자 인권)

⑤ 국가지원의 문제

〈사례7〉의 단체는 장애인권운동단체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7〉의 상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는 상담소라고 한다. 아무래도 다른 곳의 상담소는 위탁 발주처와 위탁기관과의 관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들이 결국 민간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넘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권단체들 중 많은 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면 단체의 운영 및 존립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나 위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인권단체 스스로가 국가의 인권정책이나 인권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단체이자 인권활동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단체의 존립여부를 뒤흔들 수 있는 국가의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인권단체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에 끊임없이 도전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위탁 받는 곳은 지자체 하고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돈 주는 곳이 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담의 요청이나 폭이나 사실은 그쪽 센터(위탁기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담이 결국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저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한테 오죠. (사례7. 장애인 인권)

⑥ 기타

〈사례8〉의 단체는 청소년인권운동단체이다.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전국에 60여명의 활동가들이 있지만 활동비를 지원받는 상임활동가는 한 명도 없다. 60여 명의 활동가 중 꾸준히 30-40명의 활동가들이 단체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다른 단체에는 없는 제도가 있었는데, 활동지원비 제도이다. 30-40여 명의 단체 활동가들이 무급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활동이 적극적이라고 평할 순 없다 해도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돈 문제로 인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로 스스로 기안을 올려서 매달 소정의 교통비나 통신비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활동가들의 다수가 청소년이란 점을 고려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각각의 인권단체들은 소속된 활동가들의 특성과 조직적 특징들을 감안하여 스스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단체의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다.

활동지원비 제도가 원래는 초기에는 상한 3만 원 상한 5만 원 이리다가 지금 10만 원 까지 왔는데 지원한 이유는 활동하는데 아무래도 최소한의 돈이 드는데 교통비든 식비든 월급을 주진 못해도 돈이 없어서 활동에 못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내가 이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하겠다고 지부에서 애기해서 되면 안건을 올려 승인을 하면 정기 지급을 하는 제도이고요. 10만원 받는 사람은 한 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5만 원 정도, 적으면 3만 원. (사례8. 청소년 인권)

4.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활동가 지원책

① 생활이 가능한 활동비 보조

심층면접을 마무리하며 인권활동가들에게 열악한 인권운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을 지 질문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객관식 질문이다보니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묻고자 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42.1%인 32명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보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부족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심층면접도 마찬가지였다. <사례7>과 <사례8>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돈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사례7>은 활동비 보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비 책정을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주기도 했다. 2014년까지 월 90만원으로 지급되다 2015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사례5>의 경우 활동비를 책정하더라도 꼭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최저임금이 마련된다고 개인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1>처럼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준을 넘어 민주노총에서 제시하는 실질임금까지 인권활동가들이 활동비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민노총 실질임금 정도에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아직까지 저희 단체에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민노총 실질임금 정도 받는다면 저희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으로는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남을 거예요. (사례 1. 반전평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법적인 최저임금이란 것 때문에... 인권활동가들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활동들도 많고 한데. 그걸 딱 최저임금이라는 선으로 맞춰버렸을 때 약간의 공백들이 있긴 하죠.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도 하고. 저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주 외 권역에 거주하는 활동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교통비가 드는 거죠.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돈을 주시면 좋을 거... (웃음) 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 꼭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일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실은 근본 바탕에 이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사례7. 장애인 인권)

돈. 직접 돈을 주는 게 항상 좋은 거긴 한데 재단도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중략) 주거문제라도 주거비 낮추고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생

계비에 드는 돈, 소비에 드는 돈을 낮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고요. (사례8. 청소년 인권)

② 비용과 시간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안식년 제도와 같은 유급재충전의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3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잘 쉬어야 활동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사례3>은 인권활동가들이 장시간 활동과 현안대응으로 에너지 소진도 빠르고 소속단체에 휴식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7>처럼 강제적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휴가상여금을 지급받는 활동가가 응답자 중 19.7%라는 현실과 재충전 및 휴가기간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일을 시도하는 인권활동가가 있다는 것은 재충전을 위한 쉼도 비용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7> <사례8>의 경우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재충전 휴식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급휴가 같은 거. 안식년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인권단체 중에서. 또 유급으로 다 잘 쉬고 있는 건지 그런 실태는 제가 잘 모르니깐 암튼 그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활동가들이 수는 적고 현안은 되게 많고. 현안대응하기 되게 부치고 그러다 보니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쓸 생각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오히려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기간이나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되게 탈진같이? 다 쏟아내고? 다 그냥 허허로워지고 그러면서 그만 두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안식년에 대한 거? 재충전? 재교육? 뭐 이런 거 잘 돼 있어야 좀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례3. 인권 일반)

구체적으로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까 싶어요. 저도 뭐 월차를 쓰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가의 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상으로 비용적으로도 지원이 돼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좀 어쨌든 약간은 좀 강제적으로 쉼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사례7. 장애인 인권)

휴가도 충전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휴가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충전일 수 있고 휴가를 가는데 마음의 부담을 저가면서 다녀오면 충전이 당연히 안 될 테고요. 아예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고 (사례10. 노동인권)

③ 4대보험 가입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4명, 57.9%로 비교적 높았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30명, 39.5%였다. 4대보험 적용문제에 대해 인권단체 들마다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사례3>은 기본적인 복지로서 4대보험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 조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4대보험이 정기검진과 실업수당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설문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으로 지적인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걸이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되게 기본적인,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4대보험이라던지 (중략) 아무튼 NGO 중에서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정비해주고 자꾸 얘기하고 이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약간 변칙적으로 안 했으면... (사례3. 인권 일반)

④ 인권활동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네트워크

온라인 설문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운동 지속여부에 대해 활동비만큼 전문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인권운동을 통해 새로운 인권이슈에 대해 배워가고, 에너지를 얻는다고 언급한 <사례4>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활동경력이 적고, 인턴제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사례6>의 경우도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로 했다. <사례7>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활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유입한 신입활동가들이 교육이 되었든 가벼운 만남이 되었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례2>의 경우 인권활동을 하며 부딪혔던 전문성의 한계를 언급하며 대학원진학과 같이 학업을 연장하면 이 같은 고민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심층면접 대상자 중 활동가양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례3>이 유일하다. 학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인권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배우기 위한 교육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내가 뭘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채워주는 건 나에게 어떤 활동에너지를 주는 새로운 운동에 대해 고민하는 힘인데 그런 건 사실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하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은 40-50대 활동가들을 봐도 차이가 나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관심 가지고 하는 사람과 자기 조직

안에서 머물면서 업무만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눠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들도 장기적인 활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현장에서 만난 인권이랑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인권이랑 그런 걸 안 봤으니까 그걸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 교육기회가 있으면 체계화된 교육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례6. 국제연대)

저는 사실 인권단체들이 이제는 좀 저희가 인권단체가 약간 이제 만들어지면 막 사람이 자라고 늙는 것처럼 막 활성화돼서 그다음에 또 이제 쇠퇴해서 소멸하는 것까지의 이제 주기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들이 다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사실은 인권단체 안의 새로운 활동가들이 서로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장애인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사례7. 장애인 인권)

인권단체 활동하면서 역량들이 더 전문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령 대학원 관련…….만약에 내가 좀 더 관련해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그런 거와 관련한 과정들을 좀 봐야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사례2. 성소수자 인권)

특히 <사례4>처럼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경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도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교통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배우의 욕구를 억제하는 건 활동가로서 사는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서 사실은 교육기회가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강사를 해서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의 강사비랑 교통비 이런 거 생각하면 만약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 가서 교육받는 거잖아요. 나 혼자 가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배우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큰 사람들인데 어떤 단체들 보면 실무적인 일에만 집중해서 그 활동가의 욕구를 억제할 때가 있어요.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악하지만 계속 있었던 이유는 저를 항상 서울로 보내줬던 (웃음)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할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사례4. 인권 일반, 경북지역 활동가)

⑤ 월세지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경우 월세처럼 고정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온라인 설문에서 23.7% 18명이 주거비가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으로 응답했다. 전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지출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사례1>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주거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다른 활동가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들으며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본인이 월세를 내야 하는 환경에 있었다면 인권활동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6>은 본인 경험에 비춰 월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원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프로젝트 기금운영 현실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월세를 대부분 30만 원~40만 원선으로 대부분 내시는 거 같아요. 굉장히 큰돈이긴 하죠. 저는 월세를 안내니까. 근데 어느 단체에서 활동가들의 월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면 저는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못 받아도. 왜냐면 월세를 내는 분들은 내셔야 하니까. 너무 비싸죠. 저는 월세 내었으면 활동하기 어려웠을 거 같아요. (사례1. 반전평화)

월세가 25만 원 정도 공과금 이런 게 겨울에 추우니까 합해서 8만 원 정도. 그냥 월세 지원이면 좋겠고 지원을 해주면 좋는데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별로 기금에 지원할 것 같지도 않겠다는 생각도 사실 했긴 했거든요. (사례6. 국제연대)

⑥ 공간지원

인권단체 후원금은 대개 인권활동가의 활동비와 공간운영비로 사용된다. 월세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운영비 역시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10>처럼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거나 <사례9>처럼 작은 공간조차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단체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 후원금 규모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공간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대상 단체 75개 가운데 13개 단체가 활동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체 사무실이 없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는 공간에 대한 게 워낙 다급하다 보니, 저희가 발 뺀고 씻을 때가 없어요. 상담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공간이 없다보니 이런 인터뷰를 사무실에서 하면 일에도 방해 돼요. 위축돼서 말도 못해요. (사례10. 노동인권)

감염인들을 위한 센터. 복지관 비슷하듯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하다못해 동네 노인정만 한 거라도 하나 해줬으면 사랑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뭘 해도 의욕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붓 떠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 단계는 우선 토대 마련. 사랑방이든지 경로당이든지 뭔가 하나를 만드는 게 그다음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례9. 감염인 인권)

⑦ 그 외

그 외 <사례2>처럼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액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5>의 경우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권활동가의 유입이 어려운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활동가 양성 인큐베이팅 사업을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었다. <사례10>은 단체에서 사용할 물품도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개인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단기 자금대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면.. (사례2. 성소수자 인권)

인권단체 전망 안에서 공동의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사업이 정기적으로 있어서 20대나 자신의 이후의 삶을 이런 단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거칠게 이야기하면 직업소개소? (웃음) 인권활동가 소개소? (사례5. 인권 일반, 전북지역 활동가)

하다못해 노트북을 얼마 전에 샀어요. 제 개인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쓰는데 그걸 내 돈 주고 샀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지금 자기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개인용을 계속……. 어제도 워크숍 갔는데 개인 차 있는 사람이 자기차 가지고 기름비만 받고 사용 하는 거예요. 기름비 마저도 그것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서 착한지 저는 모르겠지만(웃음) 뭐 괜찮아요. 이러는데 전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고 사용료면 사용료대로 정당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무실에

차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사무실에서 뭔가 지원할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례 10. 노동인권)

4장. 인권활동가의 생활실태 속에서 본 인권활동가 지원마련을 위한 소고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활동가들의 현재적 삶의 모습을 활동비와 생활실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했다. 인권활동가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지속가능한 인권운동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 결과 인권활동가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활동비를 받으며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도 인권활동가들이 받는 활동비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실제 연구대상군으로 포함되었던 75개 연구대상 단체 가운데 13개 단체는 상임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몇 활동가들은 식대나 교통비 일부를 수당으로 보조받기도 했지만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34.2%는 수당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여금도 월 평균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32.9%는 지급받는 상여금이 없었다. 휴가상여금을 지급받는 인권활동가는 19.7%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으로는 주거비를 뽑았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고정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나 주거 문제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어려움은 더해졌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인권활동가들은 ‘적게 쓰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일부는 복수의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부양비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과 육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약 22.4%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금융, 사보험이 없었는데 이는 인권활동가들이 미래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현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활동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았고, 현재 지급받는 활동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도 설문응답자의 78.9%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인권활동가들이 장시간의 활동으로 끊임없이 에너지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활동가들은 쉽게 휴가를 내지 못한다. 쉼에 대한 욕구가 높고 쉼이

필요하다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상임 및 반상임 활동가들이 2-3명 정도에 불과한 활동조건에서는 업무분담을 하기도 어려워 쉽게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아파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인권활동가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빈자리를 대신할 대체 인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만을 지속적으로 안고 활동을 계속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한정된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라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활동가의 유입이 어렵다는 현실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활동가들이 적어도 활동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는 인권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활동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인권운동의 지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의 활동비가 걱정하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인권활동가가 더 많았지만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과 장기적인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답한 인권활동가들도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27.6%나 되었다. 또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대략 73%의 중요도를 차지한다고 답할 만큼 현재의 활동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인권운동의 지속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지금의 활동환경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는 상임활동가 한 명을 두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상황과 인권운동 소외지역에서 악전고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듣기도 했다.

① 인권운동의 사회적 의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

인권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아야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비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권단체 입장에서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 있고 기업후원을 통해 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강화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 개인 후원회원의 후원금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재정안정성은 단기간에 개선

되기란 어렵다. 인권단체의 활동이 외부에 잘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해야만 점진적으로 단체의 재정을 확대시킬 수 있는데, 평균 2-3명 정도 근무하는 상임활동가가 정기적인 휴가조차 사용하기 힘든 조건에선 단체의 사업진행과 더불어 별도의 후원회원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단체의 사업비의 경우는 비영리재단이나 국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비 자체는 충당할 수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비에서 인건비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의 공모사업도 많지 않다.¹²⁾ 아직 한국사회에선 인권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인권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 가운데 월 후원금이 5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단체는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후원회원 유입이 쉽지 않은 것이 인권단체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들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단체 활동과 인권활동가들의 역할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단체의 후원자를 늘려갈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홍보와 후원회원 조직에 나서기 어렵다면 공동의 후원을 모으는 방식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눈에 모든 인권단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활동을 알리는 대중적 캠페인 등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② 인권활동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의 마련

아주 시급하게는 인권활동가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금이 필요하다. 이 기금이 조성된다면 주거비와 의료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인권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12) 인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은 4.9통일평화재단, 아름다운재단, 5.18재단 정도고 최근에는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와 같이 법무법인에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법인에서 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권재단의 경우 연 1,000만원 수준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재단사람은 약 3,000만원 수준의 직접지정 후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인권활동공모사업의 경우 주제가 제한적이고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족한 활동비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권활동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사회문제를 해석하고 평화로운 삶, 생명이 존중받는 삶, 사회적 약자, 소수자 편에 서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활동가로서 자기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활동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이 마련될 수 있고 이 기금을 확산시키는 과정은 인권활동가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로서 있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이 실종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현실을 메워나가려 노력하는 인권활동가와 인권단체들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2013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이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시민단체 역시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시민운동의 재생산에 심각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했다. ‘동행’은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소액대출, 상호부조,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공익활동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행’의 출발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공익활동가의 정의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있거나 공익법인의 위치에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가입조차 쉽지 않다. 가입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한편 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들 외에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실험은 지속되고 있다. 인권운동의 현장에서도 함께 시도되어야 할 실험일 것이다.

③ 인권운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마련 및 네트워크의 강화

인권운동 내적으로는 인권활동가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활동비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인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임활동가도 없고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돌아보고, 역할모델과 전문성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인권운동이 지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 인권활동가로서의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④ 공적지원 서비스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공적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공적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와 기업을 감시하는 인권운동 고유의 역할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공익활동가 지원정책이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NPO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협업공간마련, 공간대관사업, 다양한 NPO지원사업 등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지원의 영역이 공간과 사업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공익활동가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지원의 영역을 사무 공간 대여를 무상으로 한다거나, 인권활동가들이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와 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면 열악한 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권활동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와 국가가 인권운동과 인권활동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여전히 소외된 인권영역이나 인권이 실종된 현장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실체에 다각도로 접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활동가들에게 놓인 열악한 삶의 조건은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해결방법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대안이 필요한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자로, 후

원자로 참여하길 바란다.

인권활동가 활동비 저우 및 생활실태 연구

ID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 현황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더 많은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더 나아진 조건 속에서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이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 기반하여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지지/지원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활동가들의 안정적인 활동비 지급 구조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 재정발전소 지원을 받는 단체 중 인권단체, 인권활동 인큐베이팅 지원단체(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를 조사대상군으로 하며 반상근 이상 유급상임활동가를 조사대상자로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정보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 응하시는 가운데 설문문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조사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사 내용 중 의문사항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숫자화 되어 통계적으로 분석되므로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모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법무법인 지향

설문담당자 : 한영희 핸드폰 : 010-5294-1031 이메일 : passioni@hanmail.net

조사담당자 : 정을 핸드폰 : 010-2090-1595 이메일 : yol78@hanmail.net

1. 귀하의 소속단체 및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답해 주십시오.

항목	답변	
1. 소속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해당 정보는 조사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_____	
2. 소속단체에는 어떤 활동가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숫자만 작성해 주십시오. 예 : 5명 → 5)	<input type="checkbox"/> ① 유급 상임활동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② 유급 반상임활동가 (_____명) ※상임활동가는 단체복무규정(운영내규)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에 맞게 출퇴근을 하는 이를 말한다	
3. 소속단체 활동가들의 활동비 마련을 위해 단체의 재정충당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항목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① 후원회원의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② 국고보조금 중 일부로 활동비 지급 <input type="checkbox"/> ③ 비영리재단의 프로젝트비 중 일부를 활동비로 지급 <input type="checkbox"/> ④ 기업지원금 중 일부를 활동비를 지급 <input type="checkbox"/> ⑤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교육 및 회원 사업 등)	
4. 소속단체에서 귀하의 활동은 다음 중 어느 형태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상임활동가 <input type="checkbox"/> ② 반상임활동가	
5. 귀하는 소속단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6. 소속단체에서의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시간은 숫자만 작성해 주십시오. 예 : 오후 6시 → 18)	규정상 출퇴근시간	출근 : _____시 퇴근 : _____시
	실제의 출퇴근시간	출근 : _____시 퇴근 : _____시
7. 현재 소속단체에서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개월	
8. 현재 소속단체 이전의 경력까지 포함하여 인권활동가로 지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_____년차	
9. 귀하는 현재의 소속단체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문항 10번으로)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항목	답변
<p>19. 귀하가 소속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월 수령 수당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을 숫자로만 입력해주시시오. 예 : 100만원 → 100)</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만원</p>
<p>20. 귀하가 소속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상여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항목 모두 체크) ※ 상여금은 특별한 시기 혹은 특정 성과 이상을 달성하였을 때 제공받는 할증분을 말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① 명절상여금 <input type="checkbox"/> ② 휴가상여금 <input type="checkbox"/> ③ 없다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구체적으로 명시)</p>
<p>21. 연간 총 상여금액의 구체적인 금액 또는 기본급의 몇 % 인지를 입력해주시시오.</p>	<p>금액 _____ (ex. 50만원 일 경우 "50") 기본급의 몇 % _____ (ex. 100% 일 경우 "100")</p>
<p>22. 귀하의 소속단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① 가입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p>
<p>23. 귀하가 소속단체에서 제공받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항목 모두 체크) ※ 장학제도가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활동가 교육지원은 활동가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예를 들면 학원비나 단기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말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① 안식년 제도 <input type="checkbox"/> ② 장학제도 <input type="checkbox"/> ③ 활동가 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정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⑤ 연월차(휴가제도) <input type="checkbox"/> ⑥ 병가 <input type="checkbox"/> ⑦ 없다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p>

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소속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 및 제공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질문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해주시시오. 만약 귀하께서 복수의 단체에서 소속되어 계시다면, 소속되어 계신 한 단체를 기준으로 2번을 답해주시고, 복수의 단체에서 얻게 되는 수입의 전체 규모를 2-1번에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항목	답변
1. 기본급	월 _____ 만원
2. 수당 (해당항목 모두 체크) ※수당은 기본급을 보완하여 지급되는 부가금을 말합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교통비 보조 <input type="checkbox"/> ② 통신비 보조 <input type="checkbox"/> ③ 식대보조(상시적으로 단체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input type="checkbox"/> ④ 근속수당 <input type="checkbox"/> ⑤ 자녀수당 <input type="checkbox"/> ⑥ 직급수당 <input type="checkbox"/> ⑦ 연 호봉(나이에 따라 수당지급) <input type="checkbox"/> ⑧ 아근 및 휴일근무 수당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수당 (_____) <input type="checkbox"/> ⑩ 없다
	대략적인 월 수령 수당액: _____ 만원
3. 상여금 (해당항목 모두 체크) ※상여금은 특별한 시기 혹은 특정 성과 이상을 달성하였을 때 제공받는 할증분을 말합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명절상여금 <input type="checkbox"/> ② 휴기상여금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상여금 (_____) <input type="checkbox"/> ④ 없다
	연간 총 상여금액: _____ 만원 혹은 _____ %
4. 소속단체의 4대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가입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5. 소속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혜택 (해당항목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① 안식년 제도 <input type="checkbox"/> ② 장학제도 <input type="checkbox"/> ③ 활동가 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정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⑤ 연월차(휴가제도) <input type="checkbox"/> ⑥ 병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⑧ 없다
	※ 장학제도가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활동가 교육지원은 활동가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예를 들면 학원비나 단기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말합니다.

2-1. 귀하가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귀하의 전체 수입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3. 귀하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4. 귀하는 현재의 소속단체에서 규정된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연체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항 4-1번으로) ② 아니오 (문항 5번으로)

10. 귀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인권활동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조건들 중에서 ‘안정적 수입의 확보’라는 조건은 어느 정도의 _____ 비중으로 _____ 중요하다고 _____ 생각하십니까?

11. 귀하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현재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이 하고 계신 인권활동을 계속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지속할 생각이 전혀 없다(문항 10-1번으로)
- ② 지속하고 싶지만 어떻게 잘 모르겠다(문항 10-1번으로)
- ③ 할 수 있는 한 지속하고 싶다(문항 10-2번으로)
- ④ 반드시 지속하겠다(문항 10-2번으로)

10-1. 귀하께서 현재와 같은 인권활동을 10년 후에는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지속하고 싶지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항목 중 두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 ② 개인적 적성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 ③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 ④ 노동시간이 길고 개인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일이 너무 많아서)
- ⑤ 주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 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 때문에
- ⑦ 장기적으로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 ⑧ 기타 (_____)

10-2 귀하께서 현재와 같은 인권활동을 10년 후에도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두가지만 골라서 답해주십시오.

- 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 ②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및 자부심
- ③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 ④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⑤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 ⑥ 기타 (_____)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

발 행 일 : 2015년 4월 29일

발 행 처 :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발 행 인 : 이 일 영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0길 26 (성산동)

홈페이지 : www.hrfund.or.kr

이 메 일 : saram@hrfund.or.kr

전 화 : 02-363-5855

※ 본 연구는 <법무법인 지향>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